

碩士學位論文

環境會計의 測定과 公示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專攻

白 尙 勳

碩士學位論文

環境會計의 測定과 公示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成 孝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 會計學專攻

白 尙 勳

2001

# 環境會計의 測定과 公示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成 孝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년 11월 일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會計學科會計學專攻 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白 尙 勳

白尙勳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년 12월 일

委 員 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환경회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1절 환경회계의 발전	4
제2절 환경회계정보의 측정	18
제3절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33
제4절 환경회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53
제3장 제주지역 기업의 환경회계에 대한 실태 분석	57
제1절 조사방법과 대상	57
제2절 환경인식과 환경개선	59
제3절 환경회계정보의 측정	67
제4절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78
제4장 결론	83
참고문헌	86
ABSTRACT	90
(부록) 환경회계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실태 조사표	

## <표 목 차>

<표2-1-1> 환경관계법상의 목적-----	10
<표2-1-2> 환경회계의 영역-----	18
<표3-1-1> 응답기업의 업종별 구분-----	58
<표3-2-1>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 여부-----	59
<표3-2-2> 응답기업과 관련 있는 환경문제-----	60
<표3-2-3>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61
<표3-2-4> 파괴된 환경의 복구 책임-----	62
<표3-2-5> 환경오염과 공해의 관심도-----	63
<표3-2-6> 환경보존의 관리-----	64
<표3-2-7> 환경보전 대책-----	65
<표3-2-8> 환경개선에 대한 동기-----	66
<표3-2-9> 제주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67
<표3-3-1> 환경비용에 대한 개념-----	68
<표3-3-2> 환경비용의 효율적 관리-----	69

<표3-3-3> 환경비용 지출수준-----	70
<표3-3-4>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	71
<표3-3-5> 공해처리시설과 비용 지출수준-----	72
<표3-3-6> 환경비용 측정의 필요성-----	72
<표3-3-7> 환경비용 측정 이유-----	73
<표3-3-8> 환경비용의 부담 방법-----	74
<표3-3-9> 환경비용의 집계방법-----	75
<표3-3-10> 환경비용의 회계처리방법-----	77
<표3-3-11> 환경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	77
<표3-4-1> 환경회계정보의 외부 공시 여부-----	78
<표3-4-2>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의향(공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79
<표3-4-3>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이유-----	80
<표3-4-4> 환경회계정보의 공시형태-----	81
<표3-4-5> 환경회계정보의 바람직한 공시 방법-----	82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회계는 변화하는 기업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전되어온 역사의 산물이다. 따라서 회계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회계로 발전되어 왔다.

전통회계는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이익극대화 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경제적 사상을 인식·측정·보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익극대화 원리에 따른 기업행동은 환경오염 및 파괴는 물론 수많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무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나 동식물 등의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제활동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기업은 환경적응체제로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존립조차 위태롭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대기업들의 연간보고서에 사회지향적 정보의 자발적 공시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기업외부의 단체들도 환경오염의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한 정보의 실태를 공표하는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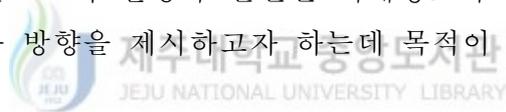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환경청이 설립되었고 특히 1980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환경오염의 방지, 자원의 절약 등 적극적 고려를 강요받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요구는 기업의 사회적 측면을 인식, 측정, 보고하는 새로운 회계시스템인 기업사회회계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정보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회계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199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환경 및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영역을 초월한 하나의 공통된 화두로 부상하고 있으며 학제적 연구체제의 정비 및 환경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제언이 요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계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환경문제에 대한 회계학적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환경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큰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관련 사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제주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회계정보의 인식도 및 측정과 공시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회계역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환경회계중 환경비용과 환경부채의 인식·측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각종 회계학 관련논문 및 저서, 연구보고서, 법전, 각국의 회계처리기준 등을 참조하여 환경비용과 환경부채의 인식·측정, 공시에 대한 회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인식과 환경비용의 측정 및 공시에 관한 회계처리문제에 대해 설문지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환경회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으로서는 환경회계의 발전과정,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 선행연구의 검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제주지역 기업의 환경회계에 대한 실태분석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인식과 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1)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 여부 2) 응답기업과 관련 있는 환경 문제 3)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4) 파괴된 환경의 복구 책임 5) 환경오염과 공해의 관심도 6) 환경보전의 관리 7) 환경보전 대책 8) 환경개선에 대한 동기 9) 환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실시하였다.

둘째는 환경회계정보의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로 1) 환경비용의 개념 2) 환경비용의 효율적 관리 3) 환경비용 지출수준 4)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 5) 공해처리시설과 비용 지출수준 6) 환경비용 측정의 필요성 7) 환경비용의 측정이유 8) 환경비용의 부담방법 9) 환경비용의 집계방법 10) 환경비용의 회계처리방법 11) 환경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실시했다.

셋째는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한 설문으로서 1)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여부 2)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의향 3)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이유 4)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형태 5) 환경회계정보의 바람직한 공시방법의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제2장 환경회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환경회계의 발전

#### 1. 환경의 정의

##### 1) Barnard의 정의

C. I. Barnard에 의하면 '환경이란 물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포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라고 논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하는 자연의 상태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는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객체를 말한다<sup>1)</sup>. 또한 환경을 구조적인 속성에서 보면 자극을 주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며 그 속에서 생물이 감지하고 감응할 수 있는 힘과 여건 및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 2) 徳谷昌勇 교수의 정의

환경을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일본의 徳谷昌勇 교수는 환경이란 자연, 인간계 및 인공계의 총합적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연계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존속시키는 기반이며 지구를 구성하는 대기권, 생물권 및 지권으로 성립된다. 인간계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자체를 가리키며 생태학적 사고 방법으로는 생물사회의 일원을 지칭한다. 그리고 인공

---

1) Chester I. Barnard,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 1938, pp.196~197.  
(이선범,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pp.8~9. 재인용)

계란 인간에 의해 창출된 모든 창조물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는 사회, 정치, 경제, 기술, 기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요소로 형성되는 내부환경과 이것과의 대립·경쟁·협력 관계에 있는 외부환경으로 분류된다. 외부환경의 구성요소에는 주주, 일반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등은 물론 기술, 경제, 정치, 사회 및 자연 등이 있다. 그리고 내부환경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파생적 인 것이며, 물적·인적 자본은 모두 외부환경으로부터 조달된다. 그러므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은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며 내부환경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조달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기업의 경제성 원리로 인해 유도되고 통합되어 간다는 것이다.

### 3)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상의 정의

1977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이란 인공환경, 인간환경, 자연환경의 총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이란<sup>3)</sup>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기업과 환경

### 1) 환경문제의 발생배경

현대 산업문명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성장으로 경이로운 물질적 풍요를 창출함으로써 인구에게 일찍이 유래 없는 문명의 혜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지구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시켜 이를 염려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와 같이 환경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된 중요한 원인으로는 질적 성장을 희생하고서라도 양적 성장을 강조한 과거의 경제정책, 환경오염의 사

2) 徳谷昌勇, 企業社會會計論, 東京 白桃書房, 1979. pp.17~18.

3) 환경보전법 제2조 1항

회적 비용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실패,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요인을 중요한 의사결정요소로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문의 기초적인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전체로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한 점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환경관련문제로는 인구폭발, 식량부족, 자연자원의 고갈, 토지공간의 협소, 에너지 문제, 각종 공해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생태학자들은 인구문제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기업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중시되는 환경문제로는 환경오염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개념을 정의하면서도 환경오염에 관하여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에 관하여는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굉음, 진동 또는 악취 등의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4)</sup>. 그리고 환경보전법에서는 공해라는 개념을 법으로부터 추방하면서 환경오염(environment pollution)이라는 관념을 새로이 도입<sup>5)</sup>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피해라는 개념을 공해의 개념 대신에 사용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요즘 공해라는 말은 일상용어로서 지극히 보편화되고 그 사용 또한 점점 광역화되고 있어 심지어는 인간공해, 정치공해, 매스컴공해 등으로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인간에 악영향을 주는 것 모두에다 공해라는 접미어를 붙여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이르렀으며, 공해라는 말의 공해시대에 다다른 느낌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공해라는 말의 남용은 공해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킴으로써 공해문제의 본질을 그릇되게 이해시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방법의 초점

---

4) 환경보전법 제2조 참조

5) 김경수, "환경회계 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학술연구논문, 제6집, 1988, P.382.

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해대책을 저해하고 또한 무익한 혼란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 시키고 있다.

## 2)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역

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환경기준에 대한 법률의 제정, 녹색정당의 출현, 소비자의 지구보호운동 등은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일 것이다. 그래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문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오늘날의 기업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회적 책임문제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환경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즉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역사회, 나아가서 사회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정지역이나 계층에만 국한된 이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제한된 집단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광범위한 성격에 비추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환경권의 개념이 헌법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권리이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증가는 새로운 환경문제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과거의 소극적인 입장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심각한 환경문제들은 계속해서 현대사회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속적으로 파괴되고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지금은 사회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도 어떤 일련의 환경보호차원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많은 환경문제들은 성격상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전체에 적용되는 범 산업적 환경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만약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법적인 규제

등을 통하여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업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적인 규제에 의존할 수 있으나 강제성을 갖는 법적 규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기업은 분명히 직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생산자 중심의 법적 규제는 기업구조의 현실에 맞게 주의 깊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실체로서 기업들은 보상이건 처벌이건 간에 환경문제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제재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적 제재의 범위는 반드시 기업의 주주들에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들은 한 기업의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 자발적인 책임을 지닌 유일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약조건이 없다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해산을 초래하는 조치가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경위험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책임은 주주에게 지워야 할 것이다.

기업에 적용되는 많은 법적 처벌조항들은 실제로 위반행위를 주도하고 결정한 경영자 간부들에게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환경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이행요구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의 환경관련 법률들은 사전예방보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후적인 처벌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상황에 대한 대처에 불완전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스스로 환경영향활동을 평가하고 환경오염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환경적으로 좋은 행위를 기업 스스로 채택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에너지 보존과 폐기물 감소가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효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책임의 무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는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든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경우 중요한 고용상 이점이 있다. 환경보호자로서의 성격을 지닌 기업은 빈약한 환경보호 이미지를 지닌 기업보다 인재채용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환경안전기준에 따른 생산비용의 초기 상승분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경영자는 환경을 추가적인 비용부담요인이 아니라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환경관리과정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면 폐기물 최소화와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상당한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기회, 고객, 투자자, 종업원, 일반대중에 대한 기업이미지 향상, 환경관련위험의 감소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여건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곧 기업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문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회계의 역할에도 이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기업회계에도 환경회계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을 기록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기업회계도 환경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환경관계를 포착하고 관련정보를 공시하며 이를 감시함으로써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존속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계구조의 확립이 요청된다.

### 3)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연달아 일어났던 낙동강과 영산강 등의 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환경법체계를 개정하여 1990년부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별로 나누어 환경규제를 개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법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해양오염방지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환경개선촉진법 등으로 분화되어 규제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우리나라 환경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환경기준을 정하고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오염물질 처리와 배출허용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규제기준과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관계법과 그 법의 목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2-1-1>과 같다.

<표2-1-1> 환경관계법상의 목적

환경관계법	환경관계법상의 목적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관계법	환경관계법상의 목적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진동규제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함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관계법	환경관계법상의 목적
해양오염방지법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수·노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오수·노수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환경부 인터넷<http://www.me.go.kr/www/law/rule/index.htm>>

환경규제의 강화는 여타 규제와는 달리 원가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은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법규에 의해 과징금의 부과, 조업중단 및 공장폐쇄 등의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피해는 한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였는데, OECD제국은 현재 EU(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은 에너지 세제를 가맹국 전체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직·간접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생산물의 생산, 교역 등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린라운드를 통해 규제 받을 것으로 보여 환경을 도외시한 경영과 국제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 3. 회계회계의 발전

#### 1) 회계의 기능과 이익개념의 변화

미국회계학회의 회계학의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회계의 본질은 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인식하고 측정·전달하여 주는 과정이 회계라고 하였다.

또한 동 보고에서 분류하여 놓은 회계이용의 목적을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한정된 자원에 따른 의사결정,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의 운영, 수탁 관리의 유지 및 보고를 들고 있으며, 네 번째로 사회적 기능과 통제의 촉진을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회계이용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6)</sup>

1973년 AICPA의 회계목적 보고서에서는 회계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타인에 대하여 자기로 인한 행위와 이 때문에 미치는 결과를 설명하는 기본적 윤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꼭 소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영향과 효과에서 법, 계약, 조직상 방침, 윤리적 의무로부터 필연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회계책임이 생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재무회계의 정보이용 대상은 주로 소유주에서 채권자로 다시 투자자로 변천하고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

6) FASB,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AA, 1966, pp.1~4.

투자자 또는 채권자의 지분이 기업이익에 공헌한 보수로서 정당화되어지는 것과 같이 기업이익 또한 사회적 이익공헌에 대한 보수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를 인한 것이었음과 종업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하여서도 그 공헌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회계는 그 이용목적과 대상에게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기능과 통제축진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면에서 극히 안일한 태도를 취하여 왔다.

이처럼 현행회계의 기능은 기업의 이익측정, 특정한 집단에 대한 이익분배를 위한 역할만 주로 수행함으로써 회계학이 그에게 주어진 영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익극대화 목적이라는 기업이 이익개념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이익개념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의 극대화일 뿐이며, 이에 벗어난 사회적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하나의 봉사나 선심으로 기업이익의 감소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자세였다.

타인의 이익을 희생케 하거나 사회의 손실로 취해지는 부분이 순수한 의미로서의 이익이 될 수 없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후의 계산분이 이익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즉 외부불경제의 내부원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의 당연성에 대하여는 이미 상술하였다. 기업 스스로 이를 조정할 수 없을 때는 사회의 힘에 의하는 길 밖에 없으며 기업 스스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의 일부를 회계제도 그 자체의 활용가운데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회계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과 통제의 축진을 위한 회계목적의 확대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기업의 활동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던 수단으로서의 회계기능영역에 질적인 면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AAA의 회계정보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경제에 있어서 재배분효과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재무제표 작성자나 이용자의 의사결정 내지는 정보처리행동에 변화를 야기 시키면 회계정책은 사회

적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회계학회에서는 "economic impact"에 관해 자주 논의된 바이지만 이는 현 재무회계에서의 좁은 의미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기업, 정부, 조합, 투자자 및 채권자의 의사결정행동에 대한 회계보고자의 impact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경제적 impact가 회계학상 문제로 대두하게 된 배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기업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업책임이 넓게 인식된 시대적 동향
- ② 회계가치가 사회통제의 도구라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
- ③ 회계기준인정에 대해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넓어졌다는 점
- ④ 당면한 사회에 해결 곤란한 문제의 증가 등을 들고 있음을 볼 때 회계정보가 환경 또는 사회에 대한 경제적 정보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환경회계의 정의

기업사회회계(Corporate Social Accounting)는 1960년 David F Linowes가 "Socio-Economic Accounting"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회계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책임회계(Social Responsibility Accounting), 사회경제회계(Social Economic Accounting), 사회감사(Social Audit)라고도 부른다.

Estes, Dierkes and Bauer는 기업사회회계로 Glautier, Underdown은 사회책임회계, Linowes는 사회경제회계, Abt는 사회감사라는 용어를, AAA의 Committee Report에서는 사회회계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용어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이나, 이를 거시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소득회계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기업사회회계로 점차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업사회회계에 대하여 Estes는 '기업의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내지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화폐적·비화폐적 계수로서 객관화하여 회계보고의 보충적 정보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경제적 실체의 내적·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으며, Ramanathan은 '기업에 대한 사회성과변수와 측정치를 모집하는 과정이며 측정절차이고, 기업의 사회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개발하여 기업내외의 이해사회집단에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Bauer and Fenn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행위들의 어떤 의미가 있고 정의할 수 있는 점위를 조직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이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면 기업사회회계는 사회에 관련된 기업의 활동영향 즉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측정·보고하고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활동에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있는데, 종래의 전통적 회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측면, 다시 말하면 재무회계의 절차에 의한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여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보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 측면은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사회적 측면이란 기업의 사회적 활동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본 기업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효익과 손실을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또는 사회성에 위배되지 않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환경회계 또는 그린회계란 환경이슈에 사업이 반응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회계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행의 회계관행으로는 우발채무로 볼 수 있다. 재무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우발을 장차 어떤 사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종국적으로 기업에 확정될 발생 가능한 이득 또는 손실과 관련되는 불확실한 상태나 조건 또는 일련의 환경<sup>7)</sup>이라 정의하고 있다. 환경회계는 우발채무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① 우발채무/위험에 대한 회계
- ② 자산 재평가와 자본계획에 대한 회계

---

7) FASB,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SFAS No.5, 1975.

- ③ 에너지, 폐기물,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의 원가분석
- ④ 환경요인을 감안한 투자평가
- ⑤ 새로운 회계와 정보시스템의 발전
- ⑥ 환경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 ⑦ 비재무적 관점에서의 원가/부채/자산을 설명하는 회계기술의 도입 및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회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 ① 전통적인 회계실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환경효과를 감소시킨다.
- ②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안에 환경 관련원가 및 수익을 도입시킨다.
- ③ 전통적인 회계실무에 환경효과 개선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단계이다.
- ④ 환경면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통제시스템, 재무적·비재무적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의 idea를 제공한다.
- ⑤ 내·외부에 공시할 목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보고하는 새로운 회계형태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 3) 환경회계의 영역

환경회계는 자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투입/산출관계에 초점을 두는 국민소득회계, 환경문제와 관련된 환경원가요소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환경재무회계 및 환경회계감사, 환경보고, 원가배분, 성과측정 및 사업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내부경영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환경관리회계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 국민소득회계는 거시경제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재무회계, 환경보고, 환경감사, 그리고 환경관리회계의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회계의 네 가지 영역의 범위와 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이슈는 다음의 <표2-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1-2> 환경회계의 영역

영역	범위	주요내용
환경재무회계	현행 재무보고서(재무제표와 주석사항)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인식·측정하고 공시함	환경회계정보의 정보수요 환경비용의 인식과 측정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환경보고	현행 재무보고서와는 별도의 독립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측정하고 공시함	환경보고서의 이용자와 포함될 정보내용 환경보고서에 포함될 정보의 특성 환경보고서의 작성지침 환경보고서의 형태
환경감사	환경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회계사 혹은 환경전문가)를 통한 검증서비스	환경감사 실무의 현상 환경보고서 작성 및 공시기준 환경감사기준 환경감사전문가
환경관리회계	환경원가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의사결정에 활용	환경원가의 분류 환경원가의 측정과 관리 환경원가의 배부기준 환경원가정보의 활용



## 제2절 환경회계정보의 측정

### 1. 환경회계정보의 구성

환경회계정보의 구성요소에는 환경과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환경비용과 환경부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질 것이며 우선 환경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하고 환경부채는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에서 다루기로 한다.

#### 1) 환경비용의 정의

전술한 환경의 의미로 미루어 볼 때 환경비용 또한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연환경의 파괴 내지 오염 및 그 보전을 위한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비용은 기업의 고유활동인 투입재 구입, 제품과 생산공정의 결정, 그리고 시스템 및 설비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경측면에서 재분류한 비용이다.<sup>8)</sup> 그러나, 하나의 비용계정이 환경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부분적으로 환경관련 비용이면서 부분적으로 환경비용이 아닌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비용에 대한 정의는 기업 자체가 환경비용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 환경비용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

## 2) 환경비용의 분류

환경비용을 분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 분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 EPA(환경부)의 환경비용<sup>9)</sup>

미국 EPA(환경부)의 환경비용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 개념의 원가계정에서는 원자재비, 시설비, 자본재 등을 원가회계와 자본계정에는 일반적으로 계상되지만 환경원가로는 보통 간주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원가계정에서는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련원가가 구체적으로 환경비용으로 고려되는가의 여부보다 환경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영상의 주요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원가는 경영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하기 힘든 비용으로써 선행환경원가,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인 환경원가, 최종환경원가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선행환경원가에는 제조공정 및 시설 그리고 생산시스템 혹은 설비운영에 선행하여 발생하는 원가로 공장입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공정설계, 공급자들의 자격, 폐기물 관리시설 평가등 이와 관련된 원가가 포함된다. 한편 경영자와 회계담당자는 공정, 시설, 시스템 및 시설의 운영과 관

8) 대한상공회의소, 환경회계의 국제동향과 국내도입방안, 1999.

9) EPA,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Accounting as a Business Management Tool : Key Concepts and Terms*, June, 1995.

련된 비용에 주로 많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들 비용은 환경원가로 고려되지 않고, 간접비와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인 환경원가에는 공정, 시스템 혹은 설비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로써 대부분 기업들이 간접비로 처리해 왔으며, 경영자나 회계담당자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다. 이중 의무적 환경원가는 자사가 설정한 법적규제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활동상 발생하는 원가로 대부분 간접비에 포함되어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③ 최종환경원가에는 위험물질 저장탱크의 교체,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등 미래시점에 발생할 비용으로 현재의 기업회계시스템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최종환경비용은 일반적으로 관리회계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시스템이나 서류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우발적 원가는 기름유출 등 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우발적 원가는 미래 시점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원가로 예상되는 화폐가치와 범위, 그리고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우발적 원가는 현재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내부의 관리회계 시스템에서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으로 정확한 예측은 힘들어도 발생 가능한 원가계정과 규모파악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관리 및 공공관계 개선원가는 연간 환경보고서, 지역사회 활동, 식수 등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공공관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미지관리 및 공공관계 개선비용은 경영층뿐만 아니라 고객, 피고용인, 지역사회와 규제당국의 기업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원가 자체는 비가시적인 것이 아니지만 기업이미지 형성과 공공관계 개선과 관련되어 기업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종종 불확실한 것이다.

환경원가의 추적 및 기록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우선, 환경 이

슈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환경원가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에 환경원가가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한다.

## (2) 菊谷正人の 분류<sup>10)</sup>

환경원가는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처리 원가나 환경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등 사후적인 원가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를 준수하거나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원가도 포함한다. 이러한 분류는 菊谷正人の 분류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환경원가를 사전적 환경원가와 사후적 환경원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사전적 환경원가

사전적 환경원가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원가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염방지비용인데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공해방지준비금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환경관련 연구개발 비용으로 공해방지설비, 자원절약설비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셋째는 환경보전·개선비용은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활용비용 등 산업폐기물, 재활용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충당금, 녹지조성비, 분담금 등이 해당된다.

### ② 사후적 환경원가

사후적 환경원가는 공해나 환경과피를 발생시킨 후의 사후 처방적 원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된다.

첫째는 오염처리비용으로 실제로 발생한 공해나 환경과피를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정상상태로 복구시키는 비용으로서 공해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등을 말한다.

둘째는 공해보상비용은 공해나 환경과피로 인한 손상에 대한 보상금, 공해관련재판에서의 패소에 따른 비용, 공해피해지역주민의 이주비 등을 말한다.

## (3) CICA의 분류<sup>11)</sup>

---

10) 菊谷正人, "環境破壊と會計・租税", 「會計」, 第143卷 第5号, 1993,5.

또 다른 환경원가분류의 체계로는 캐나다 직허회계사협회의 분류를 들 수 있다. CICA는 환경원가를 환경조치원가와 환경손실로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토지, 동식물 및 삼림과 같은 재생가능자원과 화석, 연료, 광물과 같은 재생불가능자원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물질적 환경을 의미한다.

#### ① 환경조치원가

환경조치란 환경에 대한 손상을 예방, 경감 혹은 복구하고 재생가능자원 및 재생불가능자원의 보전을 강구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조치이다. 환경조치는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CICA는 환경조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오염의 예방, 감소, 복구에 관련된 조치로 오염의 예방, 감소조치, 예정된 복구 혹은 보수, 예정되지 않은 정화 및 기타 연구개발, 환경영향평가 및 보고서 작성, 부지의 조사 및 평가, 정책프로그램 관리, 환경감사 등 개발 실시를 포함한 환경관리가 포함된다.

둘째는 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로서 재생불가능자원의 보전, 재생가능자원의 보전, 재생가능자원의 보전 등의 환경조치가 포함된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조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환경조치원가라고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소 등을 위한 신규설비의 건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제품 및 폐기물 수송, 보관, 처분방법의 개선비용, 신규의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공동시설 분담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환경손실

앞에서 설명한 환경조치원가는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지출과 관련하여 환경보전 또는 파손된 환경의 복구 등과 같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환경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이지만 아무런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 지출이 있다. 이것을 환경손실이라 한다. 예를 들면, 환경규제위반에 따른

---

11) The Canadian Institute of Accountants, *Environmental Costs and Liabilities*, 1993(장지인·정길채 공역, 환경회계 : 환경원가와 환경부채, 율곡출판사, 1998).

벌과금, 환경손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환경문제로 말미암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자산의 원가, 환경문제로 인한 공장폐쇄로부터 발생하는 비생산원가 등이 환경손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환경원가'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환경상의 손상(환경과피)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원가인데, 환경조치원가이건 환경손실이건 환경원가는 환경오염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PPP)'에 입각하여 사회적 비용으로서 내부비용화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원가는 기업회계상 환경비용 혹은 환경손실로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든지 혹은 환경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자산화되고 이연·상각되어야만 할 것이다.

#### (4) 일본환경청의 가이드라인<sup>12)</sup>

일본 환경청은 1999년 3월 환경보전원가의 파악 및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보전원가를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액과 당기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에 기인한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원가 및 이와 관련된 원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재무회계측면에서 당기에 지출된 투자액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할 것과 당기의 지출이 없어도 당기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제3자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기업의 환경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원가를 환경보전활동의 형태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직접 환경부하 저감원가

직접환경부하 저감원가는 환경부하 저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별 원가에는 공해방지원가, 지구환경보전원가,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처리, 재활용원가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환경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을 위한 원가의 세부내역에는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설비, 리스비용, 유지관리비 등이 포

12) 河野正男, "環境保全コストの把握及び公表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會計」, 第156卷, 第7号, 1999,7, pp.1~13.

함되어 있다.

#### ② 환경관리원가

환경관리원가는 환경부하저감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원가로서 사원의 환경교육원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증취득원가, 환경부하 감시 측정비, 그린구매에 따른 그린구매 이전의 원가와 차액, 저공해 연료 및 원재료 구입원가, 환경대책조직의 인건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 ③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원가

여기에는 제품 등의 재활용/회수/재상품화, 용기포장의 재활용/회수/재상품화원가, 제품 등의 설계변경 등 용기포장 등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활동, 기타 관련활동을 위한 투자액, 감가상각비, 설비 리스비용, 유지관리비 등과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 ④ 환경 R&D원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원가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제품 등의 연구개발, 제품 등의 제조단계에서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기획 설계, 물류나 제품의 판매단계에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위한 투자액, 감가상각비, 설비 리스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다.

#### ⑤ 환경관련 사회적 노력원가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투입된 원가로서 사업장 및 주변의 녹화, 미화, 조경 관련 원가, 지역 주민의 환경활동지원, 기금조성, 세미나 정보제공 등을 위한 원가, 환경단체 지원 및 환경정보공표를 위한 원가, 환경광고원가와 위의 활동을 위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직접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 ⑥ 기타 환경보전 관련원가

기타 원가로서 토양오염, 자연파괴 등의 복구비용, 환경관련 보상금, 벌금, 환경관련 소송비용, 환경관련 벌금, 과징금 그리고 기타 환경관련원가로 장래 지불될 사건에 대한 준비금 등을 포함한다.

### 3) 환경비용의 과목별 내용분석

환경비용을 과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① 환경오염방지비 : 환경오염방지비란 환경오염의 발생이나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 내지 방지하기 위해 투하된 제비용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보전 및 기타의 환경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 종류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투자비,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운영유지비, 오염회피를 위한 원재료전환비, 오염을 회피하기 위한 기타의 제비용 등이 있다.

여기에서 오염방지시설투자비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것은 영업비나 수선비 등에서 처리하여도 좋으나 중요한 것은 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기간에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비용화해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운영유지비는 일반시설과 구분이 분명할 때 오염방지비 계정에 집계하여 처리하고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비용은 발생장소별로 제조원가에 산입하거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오염발생억제를 위해 양질의 원재료로 전환하므로 추가적 비용은 일반적 재료비와 차액을 집계하여 사회비용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처리비(폐기물처리비) : 환경오염처리비는 기업제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소각·매몰·재생에 쓰여진 모든 비용을 뜻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비, 매몰처리비, 재생의 경우에는 유효이용처리비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는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③ 환경오염보상비 : 환경오염보상비는 기업이 배출한 환경오염에 의해 지역주민 기타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의 보상적 비용을 총칭한다. 피해보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보상주의가 있으나 우리 나라 민법 제94조에서는 후자에 따라서 일시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간대응의 합리성을 위해 매결산기마다 환경보상 총당금을 설정한다.

④ 사업자부담금 :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사업자 및 기타 오염의 원인을 야기케 한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

13) 김경수, 前掲書, p.38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1972년 5월 OECD환경위원회가 공해발생자 부담원칙을 발표하여 가맹국들에게 권고한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입장이다. 사업자부담금의 금액은 사업활동의 종류, 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기준으로 부담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하여 강제징수되는 성질을 가지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종의 환경오염보상관계의 환경비용이다.

⑤ 환경오염벌과금 : 공해범에 부과하는 벌금으로는 환경오염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벌칙에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벌금과 과태료의 측정은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액수로 계상하여야 한다.

⑥ 부과금제도 : 자발적인 오염억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과하여지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며, 오염억제의 책임을 일반기업에 맡겨 제3자적 규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과금 제도에는 배출부과금제도, 오염권 판매제도, 공해세제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회계와 관련시켜 보면, 벌과금이나 공해세는 임시적 지출이 보통이므로 특별손실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은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오염권 판매제도에서의 오염권비용은 이연자산으로 간주하여 그 효과가 미치는 기간의 생산원가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기타의 제도관계 환경비용으로 차후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해보험을 예상할 경우 지급보험료를 생각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말결산시에 환경보상충당금을 설정하여 충당금상각액을 비용화함으로써 일시적 비용지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나라의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미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채성충당금으로서 환경보상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수익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환경회계정보의 인식과 측정

### 1) 환경비용의 인식과 측정

환경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관련된 논점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환경비용의 자본화에 관한 기준이며, 두 번째는 비용화된 환경비용을 손익계산서의 어느 구분에 어떤 항목으로 산입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기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비용의 당기 인식액을 전기손익수정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논점인 환경비용의 자본화 문제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기업들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일반적인 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지출은 당기에 비용화하고, 비용지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계상하여 차기이후의 기간에 나누어 수익과 대응시킨다. 이러한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환경비용의 자본화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환경비용의 자본화에 관한 가장 자세한 회계기준을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FASB 긴급문제전문위원회(EITF)의 EITF 90-8은 환경비용의 자본화에 관해서 환경오염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화해야 한다고 하고, 만약 오염처리비용이 회수가 가능하고 다음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면 자본화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sup>14)</sup>.

① 비용이 기업 소유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안전성 혹은 효율성의 개선을 가져온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발생 이후 그 자산의 상태가 건설이나 그 후 취득된 시점에 있어서의 자산상태와 비교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② 관련 비용이 아직은 오염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오염을 감소 또는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비용이 건설이나 그 후 취득된 시점에 있어서 자산의 상태와 비교하여 자산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

14) EITF, *Capitalization of Costs to Treat Environment Contamination*, Issue 90-8, FASB, 1991.

③ 관련 비용이 매각을 목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매각 작업을 위해 발생한 것이다.

자산이란 FASB의 개념보고서 제6호(SFAC 6)에 의하면 환경비용이 자본화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적 편익의 증가가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편익의 증가가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EITE 90-8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립된 환경비용의 자본화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이 공표되어 있지 못하며, 필요시에는 일반회계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두 번째 논점은 비용화 처리된 환경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환경비용을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환경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및 특별손실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원가 계정이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감가상각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비,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따른 노무비, 오염억제 재료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오염물질처리비(제조과정에서 발생된 것), 제조부문에 종업원에 대한 안전피해보상비, 시험연구비상각액, 사업자부담금, 오염배출부과금, 오염권상각액 등

②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계상비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비 중 경미한 것,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유지비중 제조시설과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경미할 때,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 일반관리비부문 종사자에 대한 인적 피해보상금, 사업자부담금, 배출부과금, 법률 및 제도적 환경비용 중에서 경미한 것 등

③ 특별손실 계상비용 : 피해보상비 중 기업외부자에 대한 것, 시험연구비에 대한 연구가 그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의 상각액, 환경오염부과금, 공해세 등

이상의 환경비용의 인식은 공시될 재무제표의 결정과 기간귀속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환경비용의 측정은 그 크기를 결정하여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환경비용은 현재의 환경수준을 보전하고 예방하는데 지출한 환경오염방지비 및 처리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비용의 발생주의 적용의 초점은 환경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생산비라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물론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현재의 생산비로 취급되고 미래 환경오염을 보상하는데 발생될 비용은 미래제조원가에 할당시키고 자본화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기의 활동으로 야기된 환경손실의 보상에 관련된 비용은 전기이익의 수정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과거·현재 및 미래활동비용을 동일시하여 계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행해져야 한다. 이들 비용기록의 재무적 효과는 오염된 산업공해지역을 재복귀시킴으로써, 자산원가나 부채로 인식되어 재산가치 및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게 한다.

공업지역의 가치는 적절한 공기와 수자원 및 효율적인 오염처리에 달려 있다. 이들 환경적 요인으로는 공업지역의 손상을 받을 때의 손상비용은 재무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이 기업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오염되었다면 파괴된 자원의 비용은 생산활동과 관련시켜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타기업의 활동에 의한 지역오염이나 산업폐기물에 의해 효율성이 감소되는 변화 등은 기간비용이나 손실로써 고려될 수 있다.

환경오염의 부채회계는 몇몇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의 현행법률에 대한 위배로 야기된 법적인 채무는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을 미래기대지출에 대해서도 채무를 져야 한다. 대차의 종료시 임차한 재산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광회사는 굴착기간 동안 땅의 복구에 대해서도 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유사한 부채로서 공공재(물, 공기)의 일부분을 오염시키는데 대한 책임을 서서히 제조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야기된 자원의 낭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의해 인식하고 공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측정방법의 결여라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금주의회계는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의 통제에 책임을 지는 기업의 보고서보다는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더 양호한 것처럼 나타낼 것이므로 환경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의 회계처리에 발생주의 회계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논점은 당기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비용의 당기 인식액을 전기손익수정항목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과거 연도에 발생한 환경과피의 복구비용의 당기 계상분은 전기손익수정항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비용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환경과피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본다면 전기손익수정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전기손익수정항목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오류수정 등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손익수정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비용은 최대한 한정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

환경오염의 장래 정화책임에 대한 회계적 인식과 측정은 기업의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장래의 환경지출은 결산일 이전의 거래 또는 사건과 관련한 지출과 장래의 거래 또는 사건과 관련한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재무제표 안에서 인식의 대상이 되는 지출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한 미래의 지출이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한 장래의 지출은 FASB기준서 제5호(SFAS 5)의 우발사상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① 부채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Probable) ②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가능 할 것의 두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우발채무로서 재무제표상에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5)</sup>. SFAS 5의 세부적인 지침은 FASB해설서 제14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해설서에 따르면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에게 의사결정유용성 관점에서 최적 견적금액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15) FASB,, SFAS, No.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1975.

16) FASB, *Reasonable of Estimation of the Amount of a Loss*, FASB

SFAS 5나 SFAS Interpretation 14는 일반적인 우발채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며 환경부채에 특화된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 기준을 준용하여 환경부채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자문기구인 G4+1은 향후 연구과제 목록에 환경부채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급속히 각국에 영향을 미쳐 국내 회계기준으로 환경부채의 인식에 관한 지침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채의 인식과 관련한 추가적인 이슈는 인식시점의 결정과 측정문제이다. 인식시점에 대해서는 통상 환경부채는 환경오염이 발생된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점에서 환경부채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화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화조사의 실시 중 혹은 완료시점에서 환경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관점에서 금액의 추정 때문에 정화조사의 완료시점까지 부채인식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정화책임이 유무에 관한 판단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정화책임의 통지시점을 환경부채의 인식시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경적 관점에서는 환경부채를 강제적인 법규를 근거로 해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환경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FASB 개념보고서 제6호(SFAC 6)에서 정의하는 사회정의상의 의무도 부채로 인식해야한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여기서 사회정의상의 채무는 법률적 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도덕적 제약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다른 실체에 대해 보통의 양심이나 공정한 판단에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해야하는 의무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정의상의 의무는 환경적 관점에서 환경부채를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FASB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

Interpretation No.14, 1976, para.8.

17) FASB,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SFAC No.6, 1985

같이 법적인 정화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환경부채의 인식에 관해서는 그것이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채의 금액 측정과 관련하여 환경정화를 위한 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항목으로 AICPA SOP 96-1에서는 ① 정화노력을 위한 직접비용 ② 정화노력에 직접 관계된다고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료와 수당의 두 가지를 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특정사이트와 관련하여 환경정화책임을 공유하는 경우 책임자간에 비용을 배분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측정할 경우 전액 계상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계상할 것인지를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상황이나 사업의 특성과 관계가 될 수 있다. CICA(1993)의 견해에 따르면 장래 기대환경지출에 대해 기업의 부채를 기록될 금액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기존의 채무 추정액 전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채를 전액 인식하는 경우 기업의 부채로 기록될 금액은 기업의 재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래수익에 대응되어야 하는 이연환경비용 부분을 환경부채로부터 공제하여 대차대조표상 순액으로 계상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때 환경부채총액과 이연부채를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채의 계상은 추정계상인 이상 그 측정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최선의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적인 문제로 환경오염정화비용에 대해 보험이나 제3자에게의 잠재적인 지불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와 장래지출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로 약칭)는 SAB 92에서 환경부채총액과 환경정화에 관한 지불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FASB의 EITF 93-5도 원칙적으로 양자를 상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관점을 지지하고, 환경부채가 복원하기 위한 잠재적인 지출청구권과는 별도로 평가되고 동시에 환경복원지불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환경부채의 인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이 감액된다고 하고 있다<sup>18)</sup>.

환경부채의 현재가치로의 할인계산에 대해서는 EITF 93-5는 한정적으로 인정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SEC의 SAB 92도 할인계산을 허용하고, 현금지출의 할인에 적용할 할인율은 환경부채가 제3자와의 공정한 거래에서 결정된 금액을 발생시키는 이자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현시점에서는 환경파괴가 발생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의 활동에 기인하는 환경에의 영향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부채성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장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폐기용지의 폐쇄, 유해물질의 제거 등에 관한 환경관련 비용은 그 원인을 발생시킨 과거의 활동에 배분하여 환경비용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그것에 해당한다. 환경비용충당금은 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나 고정부채 항목으로 기재하고, 환경비용충당금 전입액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여 기업의 이익추구나 그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회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회계가 정보의 이용자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이 곧 회계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환경회계정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또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가치계산적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회계정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대한 회계정보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문화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당위적인 회계정보로 볼 수 있다. 사회에서 환경회계정보

---

18) EITF, *Accounting for Environmental Liabilities*, FASB Issue 93-5, 1993.

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제도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만을 경쟁적으로 추구할 때 복지사회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길을 저해한다는 논리 내지 새로운 기업윤리관의 보급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9)</sup>

어쨌든, 외부보고와 관련하여 환경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① 동일 업종간 또는 산업간이 비교가능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대책비 또는 환경보전비 등 환경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과 이를 계상하지 않고 있는 기업간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환경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기업은 환경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기업과 비교하여 동일 업종인 경우에 이익을 과대 계상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② 기업의 장래의 현금흐름에 관한 양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③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기업의 수익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회사의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 1. 환경회계정보공시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화된 기업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주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회적 비난은 기업의 존속 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기업행동을 사회적 관점에서 바르게 유도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회계공시제도의 확충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사회적 비난에 대응해서 새로운 기업내용공시의 노력이 산업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수출노력의 결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

19) 徳谷昌勇, 前掲書, p.148.

심화, 경제제일주의에 매달린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는 환경오염의 증대를 가져왔고, 또 단기적 도시계획 및 국토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는 경제활동을 현저히 파괴하였으며, 많은 국민의 건강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서민의 기업에 대한 불신감의 누적, 기업성악설의 신봉출토 등 기업행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강력한 요청과 아울러 기업의 내용공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강조하고 있다.

## 2.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의 내용

환경정보의 공시는 직접이해관계자는 물론 종업원이나 소비자, 지역주민, 정부기관의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즉 기업에 대한 신뢰감과 협조감을 깊이 하게 되며, 더구나 주주나 종업원에 대해서는 자부심, 책임감, 동기유발 증진에 따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가 환경정보를 공시할 때 어떤 유형으로 정보를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환경원가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환경비용 또는 환경손실로서 손익계산서에 공시하든가 혹은 환경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자본화하여 각 기간에 비용으로 배분한다. 당기수익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원가는 당기의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혹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장래의 환경대책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원가는 자본화하여 미래기간에 걸쳐서 배분 상각하는 것이다.

오염방지비용,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보전 개선비용 등의 사전적 환경대책원가는 일반 영업활동을 위해 소요된 사적비용과는 구분 계산하여 별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환경원가의 완전공시를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는 환경관련자산 및 감가상각충당금을 독립적으로 표시함과 아울러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도 환경원가를 독립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를 통하여 환경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기능적 분류에 따라 환경자산을 별도 표시하고 환경원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며

최소한 재무제표에 각주로 주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 회계기준심의회의 재무보고기준 제3호에서는 기업의 복잡한 성과를 단일의 수치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서상에서 성과별 중요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다원적 정보집합 접근방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자산구성에도 적용한다면 환경관련자산을 일반자산과는 구분표시하는 다층양식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자산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자산구성을 다층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당해 기업의 환경대책원가의 다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환경부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거래 사상과 관련된 장래의 지출과 미래의 거래 사상과 관련된 장래의 지출로 구분된다. 환경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 가능한 기본 요건은 합리적 추정가능성이며 부채성충당금의 설정을 위해서는 또한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질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과거의 거래 사상과 관련된 환경부채에 대하여 추정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채의 성질을 각주로 주기해야 할 것이다. 장래의 거래 사상과 관련된 부채성 충당금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도 불필요하다. 발생가능성이 높더라도 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면 각주 주기에 의하여 공시한다.

### 3. 환경회계정보 공시의 수단

전통적인 재무보고서에 의한 환경회계정보의 공시는 재무제표내에 공시하는 경우와 재무제표 외부에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증권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이외의 장소에 공시하는 경우이다.

#### ① 재무제표내의 공시

이는 재무제표 확대모형으로서 문장기술식 모형(주석 등)이나 계정추가식 설명(주기)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기술식 보고모형은 환경정보를 주석이나 보충명세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다. AAA의 조직행위의 환경영향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Environment Effects of Organization Behavior)는 환경정보의 공시를 재무보고서에 환경문제의 인식, 공해규제

목표, 조직의 개선 및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을 문장기술식 방식으로 주석에 첨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sup>20)</sup>.

환경문제의 인식은 공해방지에 관련된 기업의 환경문제를 식별하고 확인하기 위한 기업의 공해방지를 위한 활동, 공해로 인한 우발채무의 확인 등을 포함한다. 기업의 공해규제 목표는 기업이 마련한 공해규제 목표와 이에 관련된 계획 및 원가추정, 예산, 시기의 계획 등을 공시하는 것이다.

조직의 개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것으로 현재까지 지출된 원가, 예상되는 미래원가,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화폐적 정보 등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및 기타 기업활동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석 및 부속명세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계정추가식 보고양식은 환경관련 계정을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즉 재무제표내의 공시는 회계기준에 따라 환경비용과 환경부채를 인식하여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사항에 공시하는 것이다. 아직 환경비용과 환경부채의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제표의 본문에 공시하기보다는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UNCTAD는 ISAR의 환경회계 및 환경정보공시에 관한 제언을 받아들여, 세계의 주요 기업의 환경정보공시상황에 대해 국제회계·보고문제(International Accounting and Reporting Issues)의 1994년판(UN, 1995)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해오고 있다. UNCTAD는 1993년 Fortune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환경에 관련이 깊은 7개 업종에 속하는 총 27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대상이 업종은 화학, 삼림 및 삼림제품, 공업기계 및 농기구, 금속 및 금속제품, 자동차 및 차량부품, 석유정제, 약품·세제·화장품의 7가지였으며 분석대상은 재무보고서로 한

---

20) AAA, Committee on Environmental Effects of Organization Behavior, "report of Committee on Environmental Effects of Organization Behavior", *The Accounting Review*, Vol. 52, 1977, p.89.

정하였다.

환경정보 공시의 조사항목은 12개 항목으로서 ㉠ 환경에 대한 방침과 견해 ㉡ 주요한 환경문제, 프로그램, 방침 및 견해 ㉢ 환경목표, 기준, 배출측정 ㉣ 소송관련정보 ㉤ 재무지출 ㉥ 제품·서비스 ㉦ 연구개발활동 ㉧ 투자활동 ㉨ 영업·제조활동 ㉩ 환경정화활동 ㉪ 재무제표에의 주석정보이다.

항목명 중에서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경에 관한 사항인 것이 조건이다. 예컨대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활동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련하는 연구개발활동인 것이다.

UNCTAD의 조사결과는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2년 전 86%에서 97%로 증가하였으며 환경방침을 공시하는 기업(60%)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기업(5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은 30%미만을 나타냈으며 업종별로 환경에 민감한 업종이 높은 공시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시기업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의 전반적인 질이 개선된 증거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영국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공시되는 환경회계정보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체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환경정책, 환경관련 투자액, 보험내용, 환경감시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재무제표 외부에 공시하는 방법

이는 독립적인 공시방식으로서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에서 완전탈피하여 새로운 양식과 체계로 된 환경정보의 공시유형이다. 회계정보의 하나로서 환경정보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시스템의 성과 중심으로서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의 검토가 최우선이 된다. 발생주의 회계 적용에 의해 인식되어진 환경비용을 재무제표상에 독립표시하면 재무제표 본문에 실태공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완전 독립적인 새로운 양식과 체계로 된 환경정보의 공시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델은 다음과 같

다.

① J. T. Marlin의 공해규제보고서<sup>21)</sup>

이것은 Marlin이 1973년에 제안한 보고서로서 첫째는, 현상공해규제보고서(state of the art pollution control)로 산업별로 정한 공해규제수준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각 공장별, 공해분야별로 표시한 것이다. 둘째는, 공해방출량 및 연방기준보고서(pollution emissions and federal standards)로 기업의 실제공해방출 상황과 연방정부의 기준을 비교표시한 보고서이다.

이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공해에 대해 가능한 상황의 기준과 적절한 업적 기준에 따른 현실적 업적을 반영하도록 고안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장점으로서는 ㉠ 가정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측정척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 기준치의 보고를 요구하며 그것과 실제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 사회적 관심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라는 것, ㉣ 독립적 공인회계사가 공시보고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 적절한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점, ㉡ 그 기준은 사업별 또는 공해업종별로 개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 ㉢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의 감사료가 증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제품가격을 높이게 되고 그 액수는 공해로 인한 손해보다도 다액이 될 경우도 있다는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해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별한 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보고서의 모델은 공해에 관한 보고로서 상당한 실용성이 보이며,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 있는 공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고정보를 개발하는데 노력만 한다면 적어도 공해배출기업에 대해 그 개선행위에는 크게 자극을 줄 것이다.

② A. W. Corcoran과 W. E. Leininger의 환경교환보고서<sup>22)</sup>

---

21) J. T. Marlin, "Accounting for Pollution", *The Journal of Accountancy* (Feb, 1973), pp.41~46

22) A. W. Corcoran & W. E. Leininger, "Financial Statement Who Needs

환경교환보고서는 1970년에 Corcoran과 Leininger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제 산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증대될 때에 빨리 그 반영을 보인 것의 하나이며, 기업과 환경간의 모든 교환을 반영할 수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구분이 있으며 사회적 관심사에 관련이 있는 재무적 사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과 사회와의 모든 거래를 반영하는 현금흐름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적자원의 투입은 계상할 수 있어도 기업은 인적자원을 산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산출정보는 보충적이며 설명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물량적 자료만 준비되면 간단하게 작성하여 정보가치로써 이용이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준치나 기준치가 없으며 여러 가지 측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폐단위로서의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공시모델(공해규제보고서·환경교환보고서 등)들의 독창적인 출현은 전통적인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공시할 수 있는 기틀을 시사하였고 비교적 보고모델이 간단하여 실무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보고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기술적이며 보고자체에 평가기준 및 참고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계상의 검증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외부에 공시하는 방법은 재무제표 내에서 공시되는 정보보다 자세한 기술적인 정보가 규제기관에 의해서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SEC는 Regulation S-K에 의해 재무제표와는 별도의 SEC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환경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공시를 요구하며 아래의 세 가지 규정과 공시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 ㉠ 환경 제법령의 준수가 자본지출, 이익 및 경쟁상의 지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공시 (SEC Regulation S-K, Item 101)
- ㉡ 환경소송에 관한 공시 (SEC Regulation S-K, Item 103)

---

Them?", *Financial Executive*, Aug., 1970, pp.46~47.

㉔ 사업활동, 유동성, 자본원천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한 경영자의 토의와 분석(MD&A)에서의 공시 (SEC Regulation S-K, Item 303)

Item 101은 기업의 영업활동 일반과 환경법규 준수가 기업의 자본지출, 이익 및 경쟁적 지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Item 103은 기업활동이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환경소송이나 계류중인 혹은 법적 절차가 임박한 소송사건을 공시한다. Item 303의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환경사건도 포함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FRR(Financial Reporting Release) 36에서 설명되고 있다. 거기서 특히 슈퍼펀드법(Superfund Act)등에서 잠재적 정화 책임당사자(Potential Responsible Party, PRP)가 지정된 경우에는, PRP에 지정된 것과 잠재적인 정화비용의 총액의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법규에 관한 정보는 미국에서는 환경보호청(EPA)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SEC는 EPA와 기업의 환경사건에 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 4.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상의 고려해야 할 사항

환경재무회계는 현행의 재무보고의 틀 속에 환경정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행의 자산, 부채, 비용, 손실의 개념과 인식 및 측정기준을 전제로 하면서 재무제표와 주식사항을 통하여 환경대책자산, 환경부채, 환경원가의 인식과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 대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 대안을 실무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회계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경제적, 수량적인 기준 즉 5% 혹은 10%의 원칙을 적용할 때 환경비용이나 자산, 부채의 경우는 예외성을 인정하도록 하여 환경관련 회계정보가 독립적으로 파악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대차대조표에 형태별로 분류되어온 자산분류체계가 기능별로 분류되어 환경관련자산과 부채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도 환경관련 비용과 손실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리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부채는 기업의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항목이며, 그 측정이 주관적이고 인식의 시기나 할인문제 등 복잡한 이슈가 내재되어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을 위하여 기존의 우발채무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환경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그 내용도 기술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나아가서 측정의 문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공시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G4+1에서는 환경부채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연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였으며, 몇몇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셋째, 재무보고서를 통한 환경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시된 정보의 비교가능성의 결여이다. 기업의 환경활동에 관한 비교가능성이 있는 환경재무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환경지출의 자본화, 환경오염처리를 위한 충당금의 설정, 환경보전연구개발 등에 관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한 선진 각국의 실태

### 1) 미국

미국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보고는 유럽제국의 기업이 기업의 내부환경 특히 종업원관계를 중시하는 보고를 행하고 있음에 비해서 기업의 외부환경을 중시한 보고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중에서도 소비자문제와 자연환경 또는 지역사회에 관한 보고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다<sup>23)</sup>.

특히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는 무제한적인 공업화에 따른 공해의 격증 해결을 위하여 1960년 이후 환경보호입법이 점차 제정되고, 1970년에 환경보호청이 설립됨으로써 큰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회계공

---

23) 고선풍,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 제15집, 1996. 2월, pp.109~130.

시 영역에 있어서도 거액의 환경지출의 부담, 환경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의 존재, 환경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환경단체 등으로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의 정보공시를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져 1970년대에는 SEC에 의해 환경관련 정보의 공시가 제도화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회계와 관계되는 부분에서의 환경보고를 촉진하는 사회적 배경요인으로 아래의 세 가지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액의 환경부채의 구체화 : 미국의 각종환경법규는 기업에 많은 환경지출을 요구한다. 1990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에서 필요한 환경지출로서 석면제거비용 2.6달러, 슈퍼펀드법에 의한 오염제거비용 1.5억달러로 각종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오염방지비용(90년대의 10년간의 합계)은 2억 달러로 추정되었다.<sup>24)</sup> 미국에서는 환경규제를 위반한 경우 벌금도 높고 또 소송이 빈발한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손해배상비용의 부담도 크다. 이러한 환경에 관하여 예기되는 지출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②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의 존재 : 재무보고의 1차적 대상인 주주 중에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환경고려에 관심을 가진 CERES구성원과 같은 사회투자단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연금기금을 운영하는 뉴욕시 재무감사부는 자원관리와 폐기물문제 등은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 투자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해 환경배려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③ 기술적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전문가 : 정보공시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TRI데이터는 너무 상세하고 방대해서 컴퓨터 없이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적·전문적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새로이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전문가집단이 존재한다. 그 안에는 환경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회계관련 이외의 환경보고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강

---

24) New York Times, June 24, 1990

제적 보고, 외부단체 주도의 보고, 기업주도의 보고로 분류될 수 있다.

SEC 연차보고서는 SEC의 규제를 근본으로 비교적 충실한 환경관련 정보의 공시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환경법규 준수와 환경소송이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의 공시가 주안시되어 있고, 기업에 따른 환경보호 활동의 적극적인 공시의 불충분함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기업의 환경법규 준수에 따르는 자본지출액의 공시만으로는 미비하고 그 자본지출에 의해 방지 또는 정화된 공해정도의 공시가 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공해방지의 목표치와 실적치의 공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보호활동의 목적은 규칙준수가 아니고 공해방지이며, 공해방지의 정도야말로 이해관계자 전체에 대하여 중요하고 특히 투자가에 있어서도 공해방지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더욱 기업부담이 요구되고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용 연차보고서는 우선 SEC용 연차보고서와 비교하여 공시내용이 빈약하며, 이 연차보고서가 주주와 경영자와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SEC 연차보고서에서 공시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SEC 연차보고서에서는 공시하기 어려운 기업의 환경활동에 대한 자주적인 공시가 요망되는 것이다. 즉 기업의 환경보호활동의 방침과 공해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혹은 공해방지의 목표와 실적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주주용 연차보고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SEC는 EPA와 제휴하여 환경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EPA에 의해 환경개선 권고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정보의 공시를 강제할 방침을 굳혀, 투자가도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0년도 미국기업의 연차보고서에 있어서 환경정보 공시의 충실은 SEC의 이러한 환경정보공시 규제강화의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이것은 기업이 환경활동에 관한 정보공시 규제의 필요성을 실증한 것이다. 기업의 환경활동에 관한 비교가능한 정보 특히 재무정보의 공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방침의 공시와 함께 환경지출의 자본화, 환경오염에 대한 우발채무,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충당금의 설정, 환경보전 연구개발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을 제정하여 환경사건 및 사상의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캐나다<sup>25)</sup>

환경과 기업회계 측면의 관계를 보면, 기업의 투자자 등의 환경문제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를 들면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서의 환경관련 정보의 공시요구, 캐나다 칙허회계사회(CICA)에 의한 환경사건의 취급 및 칙허회계사의 환경문제에 공헌할 수 있는 보고서의 공표 CICA 및 AICPA 그리고 OECD의 참가에 의한 환경문제에 관한 확대회의의 개최, CICA 주도에 의한 세계회계사 회의에서의 환경문제의 제기 와 검토를 추진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업자체에서는 환경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환경방침 및 환경감사 계획의 설정 그리고 환경감사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에 의해서 연차보고서에서의 환경정보의 공시 및 환경보고서의 작성 등을 자주적으로 행하는 기업이 서서히 출현되고 있다. 또 정보공시의 내용도 추상적인 기술에서 수치 등도표를 이용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로 전환되고 있다.

연차보고서에 공시되는 환경정보는 원래 환경방침을 간단히 기술하는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근래는 투자자를 위시하여 많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CICA는 1983년에 863개사의 연차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에 있어 환경관련 정보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업종별 환경정보공시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한 863개사의 연차보고서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 환경정보 공시비율을 파악하고 더불어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기업 중 환경문제와 환경관련 법률에 관계없이 CICA Handbook Section 3060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공시하였다.

특히 석유 및 가스업의 경우는 조사기업체 수 121개사 중 114개사가 환

---

25) CICA, Financial Reporting in CANADA 1993 Twentieth Edition-A Survey of Annual Reports of Canadian Public Companies for 1992, 1991, 1990 and 1989, CICA, 1993, p.41.

경정보를 공시하여 94%라는 높은 공시비율을 나타냈으나, 공시기업체 중 37개사는 CICA Handbook Section 3060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공시하여 다양한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체는 77개사로 공시비율이 64%로 낮아졌다.<sup>26)</sup>

캐나다의 기업에 있어서 환경관련 정보의 재무제표의 공시는 계약채무 및 우발채무, 미래채거 및 부지복구비용, 환경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환경법규에 의한 벌과금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이다. 특히, 기업이 환경관련 정보의 공시를 촉구하는데는 그것을 추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온다리오와 퀴백의 증권위원회는 상장기업에 대하여 당기 및 미래기간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의 재무상 영업활동상의 영향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27)</sup>

### 3) 영국

영국기업에 의한 환경보고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992년에 England and Wales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 ICAEW)가 출판한 「비즈니스·회계·환경」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2년간에 대기업이 연차보고서에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그 중에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의 소비자는 원래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소비자에 비교하여 환경의식이 낮다고 일컬어져 왔지만, 1980년대 말에 그린소비자의 움직임이 대두되고, 저서 잡지 참고서적 등을 통한 소비자의 의식활동의 결과 소비자의 환경의식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또 증권투자의 영역에서도 사회나 환경에 대한 기업의 활동이나 자세를 의식하여 투자활동을 하는 윤리적 투자가와 그린투자가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환경문제를 둘러싼 투자가의 의식에도 변화가 보여진다. 더구나 노동자로부터의

---

26)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Environmental Reporting in Canada* : A survey of 1993 reports, Nov, 1994, pp.9~14.

27) *ibid*, pp.141~174.

압력도 있어 영국노동총동맹은 환경행동그룹을 설치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경제단체도 환경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국산업연합은 1992년에 환경비지니스 포럼을 설치하여 환경경영의 자주적인 추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문제는 1990년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영국정부는 1990년에 환경보호법을 규정하여 환경정책의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동년에 환경백서 이 공통의 유산을 발행하고 이후 매년 상세한 환경보고를 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환경정책과 UN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언도 영국정부 및 기업의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의 규제는 1990년에 시행된 환경보호법에 의해 정비·체계화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기업에 의한 환경정보의 공적기관에의 등록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의 EC지령 환경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의 영국국내에서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1992년의 환경정보규칙에 의해 일반대중이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확립되었다.

회계측면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공시에 관해서는 영국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환경문제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할 것이 널리 기대되고 있다. 재무제표상의 공시로서는 장래의 환경지출을 위한 준비금, 환경관련 우발채무, 자산가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자본투자와 영업지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기업에 있어서의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정보는 지역별·부문별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환경정보공시는 기업의 자율적 행동에 대폭 위임되어 있지만 그 자율적인 기업의 환경정보공시에 대해서도 수많은 지침·제언이 있다.

영국기업에 있어서 환경보고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여 관련 단체들의 실태조사도 빈번히 행하여졌지만, 영국기업의 환경보고에 관한 최근의 조사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KPMG

회계사무소의 1993년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기업의 환경보고의 실태를 살펴보면, 발행주식 시가액에 의거한 Financial Times의 상위 100개 회사 중에서 66개 회사가 연차보고서 내에 환경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약 25% 기업이 연차보고서와는 따로 독립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KPMG는 이 조사결과에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지적하고 있다.<sup>28)</sup>

① 환경방침을 공시하고 그 실시계획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KPMG의 조사를 보면, 1992년에는 환경방침성명서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이 42개 회사에 지나지 않았는데 1993년에는 70개 회사로 거의 배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환경방침성명서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 중 1993년에 65개 회사가 환경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1992년도의 29개 회사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증가를 하였다고 본다.

② 배출량과 원가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즉 환경목표를 수량화하여 정량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이 1993년도에 12개 회사이었지만, 이는 1992년의 6개사에 비하면 배로 증가하였으며, 또 환경실적에 대한 수량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을 보면 1993년에는 19개 회사로, 1992년도의 6개 회사에 비하면 3배로 증가한 것이다.

③ 연차보고서중의 이사회보고서에서 환경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관련의 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해서는 KPMG의 조사에서 8사가 환경원가나 환경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 공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Company Reporting의 1993년 조사에서도 환경개선원가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4%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숫자는 1992년의 2%에 비해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환경관련의 부채와 우발채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1993년도의 동조사에서는 3%이었

---

28) KPMG, "UK Survey of Environmental Reporting", KPMG, 1994, pp.1~7.

다.

그리고 KPMG조사는 정보공시의 성실성의 기준으로서, 기업에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공시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하여 12사가 good-news와 동시에 bad-news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4) 네덜란드<sup>29)</sup>

네덜란드정부는 국내여론의 영향을 받아 엄한 환경정책을 점점 착안하기 시작하였는데 1988년 12월 국립환경위생연구소에서 통합환경 조사보고를 발표하여 환경문제의 해결에는 미래세대에 계속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배려, 지구규모로서의 환경문제의 해결, 환경의 질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하는 기본 틀로서 1989년 5월에 환경정책계획을 공표하여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활동계획을 제시하였다. 그후 1990년 6월에는 환경정책계획의 일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정책 추가계획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한 세대에서 만들기 위한 야심적인 계획으로 환경보전에 열심인 각 국의 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첨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정책계획은 산업계를 직접적인 정책상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환경보존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기업내에 유효한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환경청은 1989년 8월에 기업의 환경관리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환경부담형 기업에 대하여 1995년까지 기업내부에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망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네덜란드의 환경보고는 최근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자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에 대한 환경보고와 감독관청에 대한 환경보고이다. 사회에 대한 환경보고서는 독립된 환경보고서가 있으나, 독립된 환경보고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회연차보고서가 주요한 전달매체였다. 이 사회연차보고서는 독일 및 프랑스에 있어서 사회대차대조표와 같은 것으로 기업이 주로 종업원에 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

29)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Environmental Policy in Netherlands*, NFIA, Sep, 1991, p.7 & p.44.

그러나 네덜란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에게 독립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회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함과 동시에 신뢰성있는 정보의 창출기반이 된 환경관리시스템의 준비 및 건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외지표의 역할도 하게 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있어서 기업활동에 대한 인허가가 그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의 설립시, 변경시, 확장시에 기한을 정해 인허가에 따른 규제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감독관청에 대한 환경보고는 이와 같은 인허가 요건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환경기준의 준수상황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일반화되고 있다.

실무적 동향에서는 감독관청에 의한 인허가 행정의 네덜란드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관리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시가 근래 급속히 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환경보고서 제도는 규제범위, 공시내용, 빈도, 검증시스템 등 어느 것을 취해도 산업계에서는 엄한 규제가 되어 있다. 또한 통상의 연차보고서에도 환경정보를 공시하려는 경우 환경정보 공시를 포함한 제도적 규제는 산업계 및 회계사에 앞으로 새로운 과제를 가져온다고 생각된다.

#### 5) 일본<sup>30)</sup>

최근 일본에 있어서 환경문제 혹은 환경보고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먼저 경제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지침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1991년 1월에 발표된 경제동우회의 신세기선언, 1991년 4월에 발표된 경제단체연합회의 경단련 지구환경헌장, 1992년 10월에 발표된 통상산업성의 환경에 관한 Voluntary Plan 그리고 1993년 2월에 발표된 환경청의 지구에 순응하는 기업행동지침이다.

또 기업이 과거와는 달리 환경문제에 대하여 다른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식의 변화인데 최근의 환경문제는 그 피해상황의 광역성 및 누적성 때문에 국민

30) 山上達人・菊谷正人編著, 環境會計の現況と課題, 同文館, 1995, pp.186~287

전체의 관심이 고조되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이 높이 평가되고 많은 매출실적을 올리는 실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기업은 환경관리정보의 공시 즉 환경보고를 하나의 홍보활동으로 인식하는 자세이며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기업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기업은 구미의 선진공업국의 환경문제에 관한 대응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환경문제는 국가의 환경기준 및 배출기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형 등에 엄격한 규제치가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규공장의 설치와 설비의 확장에 대하여는 법기준보다 엄한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와의 공해방지협정의 체결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환경대책의 현장에서는 매우 세밀하고 높은 수준의 공해방지책이 구사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기구(ISO)에 있어서의 환경관리·감사의 표준화 동향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일본공업표준위원회(Japanese Industrial Standard Committee JISC)의 요청을 받아 재단법인 일본규격협회와 사단법인 산업환경관리협회에 환경관리규격심의위원회와 분과회가 설치되고 관계·학회·소비자 대표기관·산업계 등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기업에 있어서 환경보고의 실정은 1970년대 후반에 실시된 실태조사 보고를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 있다.

197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일본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① 통산성 산업정책국 기업제도 위원회가 1977년에 동경증권거래소 제1부 상장기업 914사중 724사의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회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기업은 724사 중 254사로 34.8%이며, 이 중 환경문제에 관해서 기재하고 있는 기업은 81사로 11.1%에 지나지 않았다.

---

31) 上掲書, p.289.

② 일본회계연구학회의 연구그룹인 회계정보공시위원회가 1985년 세계의 기업 500사(미국기업은 제외)중에 랭크되어 있는 일본 상위기업 52사를 대상으로 사회관련정보 공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49사가 관련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관련정보 중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 영문보고서에는 3사, 광고용 보고서에는 13사가 공시하여 공시율은 아주 저조하였다.<sup>32)</sup>

③ 1992년 베르디즈(ベルディーズ)연구소가 영업보고서에서 본 기업의 환경정보의 공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경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630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124사만 영업보고서에 환경문제를 기재하고 있어 전 산업 평균 7.6%에 지나지 않았다.

④ 환경청의 위탁에 의해 재단법인 지구·인간환경 포럼이 1992년 11월 기업의 환경대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1부 및 2부 상장기업 2,080사를 대상으로 환경에 관련된 기업행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528사가 회답을 하였다.

기업활동 조사내용 중 8항에 환경보고서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528사의 회답기업 중 ㉠ 환경보고서의 작성과 공표를 한다는 기업은 8%, ㉡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23.5%, ㉢ 환경보고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팜플렛 등을 통하여 일부를 기재하고 있다는 기업은 15.9%, ㉣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42.6%, ㉤ 기타 7.6%로 나타났다<sup>33)</sup>.

⑤ 환경청의 위탁에 의해 재단법인 지구·인간환경 포럼이 1993년 9월 기업의 환경에 관련된 기업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 1부 및 2부 상장기업 2080사를 대상으로 조서표를 발송한 바 558사가 회답을 하여 회수율은 26.8%이었다.

기업행동 조사내용 중 환경보고서의 상황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다가 6.3%, ㉡ 작

32) 베르디ーズ研究所, 「營業報告書にみる企業の環境情報の開示」, 리サイクル文化社, 1992, p.10.

33) 環境廳, 「環境にやさしい企業行動調査報告書」, 1993, p.44.

성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가 21.7%, ㉓ 팜플렛의 일부에 기재한다가 18.3%, ㉔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기재한다가 9.0%, ㉕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44.3%, ㉖ 기타가 2.0%로 나타났다<sup>34)</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기업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공시의 저조함은 최근까지도 개선의 의미는 없고, 공시하는 기업도 일부 한정된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 제4절 환경회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1. 국내연구

###### 1) 정혜영, 주진규의 연구<sup>35)</sup>

정혜영과 주진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유독성 폐기물 누출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가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즉,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 중에서 공해 누출 사실이 적발되어 신문에 보도되었던 99개 기업중에서 미국증권거래소에 보통주가 거래되고 있던 45개 기업의 117개 적발건수를 대상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 주가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해물질 유출적발일 전후의 주가반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신문보도일전 2일부터 보도일까지의 주가는 유의(5% 수준)한 주가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유독성 공해물질이 적발된 이후 6개월간의 주식가격은 상당한 하락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유의수준) 지구

③ 공해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기업 즉 거액의 공해정화비용이 요구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가가 더욱 하락한

34) 財團法人地球人間環境フォーラム, 「環境にやさしい企業行動調査報告書」, 1994, pp. 32~33.

35) 정혜영·주진규, “공해물질누출발견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 「경영학연구」, 제31호, 1992, pp.1~27.

것으로 분석되었다.(5% 유의수준)

2) 김휘조의 연구<sup>36)</sup>

김휘조는 우리 나라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환경문제 공시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즉 1986, 1990, 1994년에 걸쳐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을 상장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부 기업간에 환경회계에 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1부에 소속된 기업들의 환경회계에 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업종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해배출에 관련된 문제를 별도로 회계처리하거나 외부보고서에 공시하는 기업들은 소수이며 이는 1·2부 기업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이만우의 연구<sup>37)</sup>

이만우는 환경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필요성과 회계역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문제의 회계처리문제를 일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기본적 회계개념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보수주의 원칙 등이 환경과 관련된 제3의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녹색회계보고를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서 사용되는 특별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연자산신탁회계라는 개념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4) 박연호의 연구<sup>38)</sup>

박연호는 회계법인과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회계의 실태와 환경회계에 관한 회계전문가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동양맥주와 유공 등 일부 대기업에서 영업보고서에 환경보호시설에 관한 투자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재무제표에 환경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인회계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환경회계정보의 공시방법으로는 현행회계제도 내에

---

36) 김휘조, “기업의 특질 및 산업분류에 따른 환경회계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5호, 1992, pp.57~79.

37) 이만우, “녹색회계보고”, 「회계」, 제29호, 1993, pp.63~74.

38) 박연호, “환경회계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p.1~138.

서 주석 또는 보충설명 등의 방법으로 환경정보를 추가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73%)이고 환경회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서는 환경법규 준수여부, 우발채무 인식, 폐기물처리 회계방법 강구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외국연구

### 1) D. R. Beresford의 연구<sup>39)</sup>

Beresford(1977년)의 지도에 따라 Ernst & Ernst 회계사무소가 사회적 책임의 공시범위와 그 특질을 미국의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다. 이 조사에서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환경사항, 평등한 고용기회, 인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제품에 관한 것, 윤리규제 상의 책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고의 영역으로 중요한 것들은 환경상의 질, 평등한 고용기회, 제품의 안정성, 교육보조, 자선적 기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성, 지역사회에의 원조계획 등인데 이중에서도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George O. Gamble 등의 연구<sup>40)</sup>

Gamble 등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간에 걸쳐 미국내의 12개 업종 234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회계정보에 관한 공시내용의 질을 업종별과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서 공히 1989년 이후 환경정보 공시의 양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위험이나 현재 및 장래의 현금흐름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기업공해문제에 관하여 우리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20%미만만이 공시되고 있어 전반적인 공시의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유업종, 철강업종, 폐기물처리

39) D. R. Beresford,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Grows", *Management Accounting*, May 1977, p.56.

40) George, O. Gamble, athy Hsu, Devaun Kite & Robin R. Radtke, "Environmental Disclosure in Annual Reports and 10 Ks : A Examination", *Accounting Horizons*, Vol.9, No.3,1995, pp.34~54.

업종 등이 석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화학업종 및 자동차 관련 업종 등에 비해서 환경정보 공시의 질이 가장 높고, 특히 정유업종의 공시내용이 가장 충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방법으로는 환경관련 문제에 관한 간단한 설명, 주석에 의한 공시방법, 사건에 대한 구체적 기술 등이 차례로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Bebbington의 연구<sup>41)</sup>

Bebbington 등은 영국의 1,000개 기업체의 재무담당 중역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환경문제 공시에 관한 회사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1%가 재무제표에 환경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환경문제의 공시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의 61%는 환경문제 공시에 회계담당자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응답자의 61%는 환경문제 공시에 회계담당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40%는 회계담당자가 회사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52%는 환경정보의 공시가 법령으로서 요구될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80% 이상의 응답자가 장래에 환경관련 법규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41) Rob Gray, Bebbington, "Accounting for the environment", *Green Accounting*, Wiener Markus Pub, Inc, 1993.

## 제3장 제주지역 기업의 환경회계에 대한 실태 분석

### 제1절 조사방법과 대상

제주도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환경회계정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환경회계에 대한 기업의 실태 조사를 위해 제주도내 기업중 250개 기업에 대해 설문지와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주도내 기업중 제조업, 양돈(축산)업, 양식업, 농업, 식·음료업, 숙박업, 기타 등 무작위로 추출하여 250부를 발송하여 그 중 180부를 회수하여 72%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나, 데이터불량 등으로 3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49부를 표본으로 하였다.

위에서 기업을 무작위 추출함에 있어서 비교적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기업군인 은행, 증권업, 보험업, 도매 및 소매, 기타 중개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응답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제주지역 기업이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 그리고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34개 문항을 질문하였으며 위의 사항을 주요수단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단순 통계임으로 Exce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유효표본의 수를 가지고서 조사결과를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부항목에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응답수와 유효표본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조사에 사용되어질 유효표본의 기업의 수는 149사로 이들의 업종을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3-1-1>과 같다.

이 업종을 구분하는 데 설문지상에는 제조업, 축산(양돈업), 양식업, 농업,

숙박업, 식·음료업, 기타로 7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농업과 숙박업의 경우 회수율의 부진과 데이터의 내용이 미비하여 유효표본의 수가 타업종에 비해 적음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별 큰 의미가 없어 그 중 유효표본만을 기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식·음료업인 경우 업종별 분류기준상 제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이라서 결과 분석시에 제조업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제조업에 포함시킨 산업으로는 섬유·경공업·전자, 화학, 기계·자동차, 식·음료업,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제조업, 양돈(축산)업, 양식업 및 기타의 4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리고 조사 기업이 단지 내에 있는지, 독립된 장소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독립된 장소에 있는 기업이 107사(71.8%), 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42사(28.2%)로 나타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또한 종업원의 수, 전년도 매출액, 창업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한 기업수가 적어 분석자료로 사용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답해 준 기업들의 규모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본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금의 규모는 1억 이하가 11사(7.4%), 1억~10억이 74사(49.7%), 11억~30억이 16사(10.7%), 31억~50억이 6사(4.0%)이며, 51억 이상이 3사(2.0%), 무응답이 39사(26.2%)로 나타났다.

<표3-1-1> 응답기업의 업종별 구분

(단위 : 사/%)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계
응답 기업수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 )는 총 응답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제2절 환경인식과 환경개선

환경인식과 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1)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 여부 2) 응답기업과 관련 있는 환경 문제 3)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4) 파괴된 환경의 복구 책임 5) 환경오염과 공해의 관심도 6) 환경보전 7) 환경보전 대책 8) 환경개선에 대한 동기 9) 환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실시하였다.

### 1)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 여부

환경문제는 귀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2-1>과 같다.

<표3-2-1>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 여부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없다	2 (5.3)	1 (3.3)	0 (0.0)	2 (4.3)	5 (3.4)
거의 없다	6 (15.8)	3 (10.0)	1 (2.9)	6 (13.0)	16 (10.7)
보통이다	6 (15.8)	9 (30.0)	4 (11.4)	9 (19.6)	28 (18.8)
조금 있다	11 (28.9)	7 (23.3)	15 (42.9)	20 (43.5)	53 (35.6)
아주 많다	13 (34.2)	10 (33.3)	15 (42.9)	9 (19.6)	47 (31.5)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다 53사(35.6%), 아주 많다 47사(31.5%), 보통이다 28사(18.8%)의 순서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기업이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13사(34.2%)가 아주 많다, 11사(28.9%)는 조금 있다는 응답이 나왔고, 양돈업의 경우는 아주 많다 10사(33.3%), 보통이다 9사(30.0%), 조금 있다 7사(23.3%)로 나타났고 양식업

의 경우는 조금 있다와 아주 많다는 응답이 각각 15사(42.9%), 기타의 업종에서는 조금 있다는 응답이 20사(43.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응답 기업 중에서도 양돈업, 양식업, 제조업 순서로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환경문제

귀사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환경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2-2>과 같다.

<표3-2-2> 응답기업과 관련 있는 환경 문제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대기오염	9 (19.1)	3 (8.8)	1 (2.5)	5 (9.1)	18 (10.2)
수질오염	12 (25.5)	9 (26.5)	11 (27.5)	13 (23.6)	45 (25.6)
토양오염	2 (4.3)	3 (8.8)	1 (2.5)	11 (20.0)	17 (9.7)
폐기물오염	9 (19.1)	0 (0.0)	0 (0.0)	12 (21.8)	21 (11.9)
굉음/진동/악취	3 (6.4)	16 (47.1)	1 (2.5)	5 (9.1)	25 (14.2)
해양오염	3 (6.4)	0 (0.0)	26 (65.0)	4 (7.3)	33 (18.8)
무응답	9 (19.1)	3 (8.8)	0 (0.0)	5 (9.1)	17 (9.7)
계	47 (26.7)	34 (19.3)	40 (22.7)	55 (31.3)	176 (100.0)

전체적으로는 수질오염이 45사(25.6%)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양오염 33사(18.8%), 굉음/진동/악취가 25사(14.2%), 폐기물오염 21사(11.9%), 대기오염이 18사(10.2%), 토양오염이 17사(9.7%), 무응답 또는 환경오염과 연관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17사(9.7%)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질오염 12사(25.5%), 대기오염과 폐기물오염이 각각 9사(19.1%), 양돈업의 경우에는 핥음/진동/악취가 16사(47.1%)로 가장 높으며 수질오염도 9사(26.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오염이 26사(65.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수질오염도 11사(27.5%)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업종에는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토양오염 순으로 나타났다.

### 3)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3-2-3>과 같다.

<표3-2-3> 환경오염 원인제공자

(단위 : 사(%))

업종 \ 조사항목	제조업	축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아니다	2 (5.3)	0 (0.0)	0 (0.0)	1 (2.2)	3 (2.0)
거의 아니다	2 (5.3)	5 (16.7)	0 (0.0)	6 (13.0)	13 (8.7)
보통이다	9 (23.7)	5 (16.7)	5 (14.3)	8 (17.4)	27 (18.1)
조금 있다	15 (39.5)	12 (40.0)	16 (45.7)	13 (28.3)	56 (37.6)
아주 많다	9 (23.7)	8 (26.7)	13 (37.1)	17 (37.0)	47 (31.5)
무응답	1 (2.6)	0 (0.0)	1 (2.9)	1 (2.2)	3 (2.0)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다 56사(37.6%), 아주 많다 47사(31.5%), 보통이다 27사(18.1%)로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는 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5사(39.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와 아주 많지도 각각 9사(23.7%)로 높게 나타났다. 양돈

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2사(40.0%)가 가장 높으며 아주 많다도 8사(26.7%)로 나타났다. 양식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6사(45.7%)로 가장 높으며 아주 많다도 13사(37.1%)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업종에서는 아주 많다가 17사(37.0%)로 가장 높으며 조금 있다도 13사(28.3%)로 높았다.

#### 4) 환경복구책임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2-4>와 같다.

<표3-2-4> 파괴된 환경의 복구 책임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없다	3 (7.9)	0 (0.0)	0 (0.0)	0 (0.0)	3 (2.0)
거의 없다	1 (2.6)	1 (3.3)	0 (0.0)	6 (13.0)	8 (5.4)
보통이다	5 (13.2)	5 (16.7)	3 (8.6)	7 (15.2)	20 (13.4)
조금 있다	15 (39.5)	13 (43.3)	15 (42.9)	16 (34.8)	59 (39.6)
아주 많다	13 (34.2)	11 (36.7)	14 (40.0)	16 (34.8)	54 (36.2)
무응답	1 (2.6)	0 (0.0)	3 (8.6)	1 (2.2)	5 (3.4)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다 59사(39.6%), 아주 많다 54사(36.2%)로 약80%의 기업에서 파괴된 환경복구의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조금 있다 15사(39.5%), 아주 많다 13사(34.2%)의 순서이며 양돈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3사(43.3%), 아주 많다 11사(36.7%)였다. 그리고 양식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5사(42.9%), 아주 많다 14사(40.0%), 기타 업종의 경우 조금 있다와 아주 많다가 각각 16사(34.8%)로 가장 많이 답했다.

5) 환경오염과 공해의 관심도

환경오염이나 공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2-5>와 같다.

<표3-2-5> 환경오염과 공해의 관심도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없다	1 (2.6)	1 (3.3)	0 (0.0)	1 (2.2)	3 (2.0)
거의 없다	9 (23.7)	6 (20.0)	10 (28.6)	14 (30.4)	39 (26.2)
보통이다	13 (34.2)	14 (46.7)	3 (8.6)	13 (28.3)	43 (28.9)
조금 있다	11 (28.9)	4 (13.3)	15 (42.9)	13 (28.3)	43 (28.9)
아주 많다	4 (10.5)	4 (13.3)	6 (17.1)	4 (8.7)	18 (12.1)
무응답	0 (0.0)	1 (3.3)	1 (2.9)	1 (2.2)	3 (2.0)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와 조금 있다가 각각 43사(28.9%)이며 아주 많다가 18사(12.1%)였다. 한편 관심이 거의 없다고 답한 기업도 39사(26.2%)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반영해 주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보통이다 13사(34.2%), 조금 있다 11사(28.9%), 거의 없다 9사(23.7%)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양돈업의 경우 보통이다 14사(46.7%), 거의 없다 6사(20.0%)였다. 양식업의 경우에는 조금 있다 15사(42.9%), 거의 없다 10사(28.6%)이고, 기타 업종의 경우 거의 없다 14사(30.4%), 보통이다와 조금 있다는 응답이 각각 13사(28.3%)로 나타났다.

6) 환경보전의 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결과

는 <표3-2-6>과 같다.

<표3-2-6> 환경보전의 관리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필요 없다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의 필요 없다	0 (0.0)	1 (3.3)	0 (0.0)	1 (2.2)	2 (1.3)
보통이다	1 (2.6)	2 (6.7)	3 (8.6)	2 (4.3)	8 (5.4)
조금 필요하다	5 (13.2)	6 (20.0)	9 (25.7)	7 (15.2)	27 (18.1)
아주 필요하다	32 (84.2)	21 (70.0)	23 (65.7)	35 (76.1)	111 (74.5)
무응답	0 (0.0)	0 (0.0)	0 (0.0)	1 (2.2)	1 (0.7)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가 111사(74.5%)로 압도적으로 많아 각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아주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제조업의 경우 32사(84.2%), 양돈업의 경우 21사(70.0%), 양식업의 경우 23사(65.7%), 기타 업종이 35사(76.1%)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이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알 수 있다.

#### 7) 환경보전 대책

귀사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3-2-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다 58사(38.9%), 보통이다 34사(22.8%), 아주 많다가 32사(21.5%)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환경보전 대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조금 있다 15사(39.5%), 아주 많다 9사(23.7%) 양돈업의 경우 조금 있다 11사(36.7%), 아주 많다 10사(33.3%) 양식업의 경

우 조금 있다 16사(45.7%),아주 많다는 보통이다는 응답도 각각 8사(22.9%)였다. 기타 업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6사(34.8%), 보통이다 12사(26.1%)의 순서였다.

상기 설문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실행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수는 30사로 대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혀 노력이 없는 30사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새로운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9사), 비용이 과다(8사),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8사) 기타(5사)로 나타났다.

<표3-2-7> 환경보전 대책

(단위 : 사(%))

업종 \ 조사항목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없다	2 (5.3)	0 (0.0)	0 (0.0)	3 (6.5)	5 (3.4)
거의 없다	5 (13.2)	2 (6.7)	3 (8.6)	9 (19.6)	19 (12.8)
보통이다	7 (18.4)	7 (23.3)	8 (22.9)	12 (26.1)	34 (22.8)
조금 있다	15 (39.5)	11 (36.7)	16 (45.7)	16 (34.8)	58 (38.9)
아주 많다	9 (23.7)	10 (33.3)	8 (22.9)	5 (10.9)	32 (21.5)
무응답	0 (0.0)	0 (0.0)	0 (0.0)	1 (2.2)	1 (0.7)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8) 환경개선 동기

아래의 <표3-2-8>은 환경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하여 노력하려는 태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8사(52.3%), 지역주민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사(21.5%), 법적인 제약과 유관기관의 통제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업은 23사

(15.4%), 기타와 무응답이 16사(10.7%)의 순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19사(50.0%)로 가장 높았고, 법적 제약과 유관기관 통제 9사(23.7%)의 순서였다. 양돈업의 경우는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24사(80.0%)로 가장 높았다. 양식업의 경우는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17사(48.6%)로 가장 높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15사(42.9%)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에서는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18사(39.1%), 법적 제약과 유관기관 통제 10사(21.7%)였다.

<표3-2-8> 환경개선에 대한 동기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지역주민과의 관계	7 (18.4)	3 (10.0)	15 (42.9)	7 (15.2)	32 (21.5)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19 (50.0)	24 (80.0)	17 (48.6)	18 (39.1)	78 (52.3)
법적제약과 유관기관통제	9 (23.7)	3 (10.0)	1 (2.9)	10 (21.7)	23 (15.4)
기타	2 (5.3)	0 (0.0)	2 (5.7)	6 (13.0)	10 (6.7)
무응답	1 (2.6)	0 (0.0)	0 (0.0)	5 (10.9)	6 (4.0)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 9) 환경 홍보 및 교육

제주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2-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 기업이 104사(69.8%), 그리고 조금 필요하다는 39사(26.2%)로 응답기업의 95% 이상이 환경의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거의 유사하게 응답하고 있으며 아주 필요하다는와 조금 필요하다는가 제조업의 경우 29사(76.3%), 8사(21.1%) 양돈업의 경우 18사(60.0%), 10사(33.3%) 양식업의 경우 25사(71.4%), 9사(25.7%) 기타 업종

의 경우 32사(69.8%), 12사(26.1%)로 각각 나타났다.

<표3-2-9> 제주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필요 없다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의 필요 없다	1 (2.6)	0 (0.0)	0 (0.0)	0 (0.0)	1 (0.7)
보통이다	0 (0.0)	2 (6.7)	1 (2.9)	1 (2.2)	4 (2.7)
조금 필요하다	8 (21.1)	10 (33.3)	9 (25.7)	12 (26.1)	39 (26.2)
아주 필요하다	29 (76.3)	18 (60.0)	25 (71.4)	32 (69.6)	104 (69.8)
무응답	0 (0.0)	0 (0.0)	0 (0.0)	1 (2.2)	1 (0.7)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 제3절 환경회계정보의 측정

환경회계정보의 측정에 대한 설문은 1) 환경비용의 개념 2) 환경비용의 효율적 관리 3) 환경비용 지출수준 4)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 5) 공해처리시설과 비용 지출수준 6) 환경비용 측정의 필요성 7) 환경비용의 측정이유 8) 환경비용의 부담방법 9) 환경비용의 집계방법 10) 환경비용의 회계처리방법 11) 환경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실시했다

#### 1) 환경비용의 개념

환경비용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다가 50사(33.6%), 거의 모르고 있다 44사(29.5%)로 환경비용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업종별로는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제조업의 경우 11사(28.9%), 보통이다 10사(26.3%) 양돈업의 경우 조금 알고 있다 9사(30.0%), 보통이다 6사(20.0%) 양식업의 경우 조금 알고 있다 11사(31.4%) 기타 기업의 경우 조금 알고 있다 19사(41.3%)로 나타났다. 한편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13사(34.2%), 양돈업의 7사(23.3%), 양식업의 경우 14사(40.0%), 기타 업종의 경우는 10사(21.7%)로 나타났다. 특히 양돈업의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다 7사(23.3%)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3-3-1> 환경비용에 대한 개념

(단위 : 사(%))

업종 \ 조사항목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모르고 있다	3 (7.9)	7 (23.3)	4 (11.4)	5 (10.9)	19 (12.8)
거의 모르고 있다	13 (34.2)	7 (23.3)	14 (40.0)	10 (21.7)	44 (29.5)
보통이다	10 (26.3)	6 (20.0)	4 (11.4)	7 (15.2)	27 (18.1)
조금 알고 있다	11 (28.9)	9 (30.0)	11 (31.4)	19 (41.3)	50 (33.6)
아주 잘 알고 있다	1 (2.6)	1 (3.3)	1 (2.9)	4 (8.7)	7 (4.7)
무응답	0 (0.0)	0 (0.0)	1 (2.9)	1 (2.2)	2 (1.3)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2) 환경비용의 효율적 관리

제주지역의 특성상 환경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 93사(62.4%), 조금 필요하다 40사(26.8%)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아주 필요하다 27사(71.1%), 양돈업의 경우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16사(53.3%), 아주 필요하다 11사(36.7%)로 타 업종보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양식업의 경우는 아주 필요하다 26사(74.3%)로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업종의 경우는 아주 필요하다 29사(63.1%), 조금 필요하다 12사(26.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3-3-2> 환경비용의 효율적 관리

(단위 : 사(%))

업종 \ 조사항목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필요 없다	0 (0.0)	0 (0.0)	1 (2.9)	0 (0.0)	1 (0.7)
거의 필요 없다	2 (5.3)	0 (0.0)	1 (2.9)	0 (0.0)	3 (2.0)
보통이다	3 (7.9)	2 (6.7)	1 (2.9)	4 (8.7)	10 (6.7)
조금 필요하다	6 (15.8)	16 (53.3)	6 (17.1)	12 (26.1)	40 (26.8)
아주 필요하다	27 (71.1)	11 (36.7)	26 (74.3)	29 (63.1)	93 (62.4)
무응답	0 (0.0)	1 (3.3)	0 (0.0)	1 (2.2)	2 (1.3)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 3) 환경비용 지출수준

기업에서는 환경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지출되고 있다 63사(42.3%), 보통이다 27사(18.1%), 많이 지출되고 있다 14사(9.4%)로 나타났고 38사(25.5%)는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약간 지출되고 있다 14사(36.8%), 거의 없다 11사(28.9%), 보통이다 8사(21.1%)의 순서였다. 양돈업의 경우는 약간 지

출되고 있다 11사(36.7%), 보통이다 9사(30.0%), 많이 지출되고 있다 8사(26.7%)로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환경비용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의 경우는 약간 지출되고 있다 20사(43.5%), 거의 없다 16사(34.8%)였다.

<표3-3-3> 환경비용 지출수준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없다	1 (2.6)	0 (0.0)	0 (0.0)	3 (6.5)	4 (2.7)
거의 없다	11 (28.9)	2 (6.7)	9 (25.7)	16 (34.8)	38 (25.5)
보통이다	8 (21.1)	9 (30.0)	4 (11.4)	6 (13.0)	27 (18.1)
약간 지출되고 있다	14 (36.8)	11 (36.7)	18 (51.4)	20 (43.5)	63 (42.3)
많이 지출되고 있다	2 (5.3)	8 (26.7)	3 (8.6)	1 (2.2)	14 (9.4)
무응답	2 (5.3)	0 (0.0)	1 (2.9)	0 (0.0)	3 (2.0)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 4)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

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업의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낮은 편이다 47사(31.5%), 약간 과중한 편이다 31사(20.8%), 매우 낮은 편이다 27사(18.1%)로 나타나 기업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약간 낮은 편이다 10사(26.3%), 적정 수준인 편이다 8사(21.2%) 양돈업의 경우는 약간 과중한 편이다 13사(43.3%), 약간 낮은 편이다 7사(23.3%) 양식업의 경우는 약간 낮은 편이다 14사(40.0%), 매우 낮은 편이다 7사(20.0%) 기타 업종의 경우는 약간 낮은 편이다 16사(34.8%), 매우 낮은 편이다 13사(28.3%)로 상대적으로 양돈업의 경우가 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이 과중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3-3-4>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의 부담수준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매우 높은 편이다	4 (10.5)	3 (10.0)	1 (2.9)	0 (0.0)	8 (5.4)
약간 과중한 편이다	7 (18.4)	13 (43.3)	5 (14.3)	6 (13.0)	31 (20.8)
적정 수준인 편이다	8 (21.2)	5 (16.7)	5 (14.3)	8 (17.4)	26 (17.4)
약간 낮은 편이다	10 (26.3)	7 (23.3)	14 (40.0)	16 (34.8)	47 (31.5)
매우 낮은 편이다	6 (15.8)	1 (3.3)	7 (20.0)	13 (28.3)	27 (18.1)
무응답	3 (7.9)	1 (3.3)	3 (8.6)	3 (6.5)	10 (6.7)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5) 공해처리시설과 비용 지출수준

기업의 공해처리시설과 비용지출은 법의 기준에서 실현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 50사(33.6%), 약간 낮은 수준이다 30사(20.1%), 약간 실현된 수준이다 25사(16.8%)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보통이다와 약간 낮은 수준이다가 각각 9사(23.7%), 약간 실현된 수준이다 8사(21.1%) 양돈업의 경우 보통이다 15사(50.0%), 거의 실현된 수준이다 9사(30.0%)로 높게 나타났다. 양식업의 경우 보통이다 16사(45.7%), 약간 낮은 수준이다 7사(20.0%) 기타 업종의 경우 약간 실현된 수준이다, 보통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가 각각 10사(2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복구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느끼는 반면에 이를 위한 사전 또는 사후적인 공해처리시설과 이에 대한 비용의 지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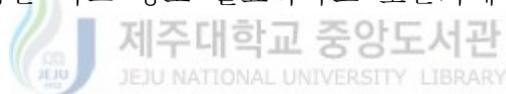
<표3-3-5> 공해처리시설과 비용 지출수준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축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계
거의 실현된 수준이다	6 (15.8)	9 (30.0)	3 (8.6)	6 (13.0)	24 (16.1)
약간 실현된 수준이다	8 (21.1)	1 (3.3)	6 (17.1)	10 (21.7)	25 (16.8)
보통이다	9 (23.7)	15 (50.0)	16 (45.7)	10 (21.7)	50 (33.6)
약간 낮은 수준이다	9 (23.7)	4 (13.3)	7 (20.0)	10 (21.7)	30 (20.1)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5 (13.2)	0 (0.0)	1 (2.9)	6 (13.0)	12 (8.1)
무응답	1 (2.6)	1 (3.3)	2 (5.7)	4 (8.7)	8 (5.4)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6) 환경비용 측정의 필요성

환경비용의 측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6>과 같다.



<표3-3-6> 환경비용 측정의 필요성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필요 없다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의 필요 없다	1 (2.6)	0 (0.0)	0 (0.0)	3 (6.5)	4 (2.7)
보통이다	4 (10.5)	6 (20.0)	7 (20.0)	7 (15.2)	24 (16.1)
조금 필요하다	13 (34.2)	10 (33.3)	10 (28.6)	8 (17.4)	41 (27.5)
아주 필요하다	20 (52.6)	14 (46.7)	18 (51.4)	25 (54.3)	77 (51.7)
무응답	0 (0.0)	0 (0.0)	0 (0.0)	3 (6.5)	3 (2.0)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 77사(51.7%), 조금 필요하다가 41사(27.5%), 보통이다 24사(16.1%)로 대부분의 기업이 환경비용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아주 필요하다 20사(52.6%), 조금 필요하다 13사(34.2%) 양돈업은 아주 필요하다 14사(46.7%), 조금 필요하다 10사(33.3%) 양식업에서는 아주 필요하다 18사(51.4%), 조금 필요하다 10(28.6%), 보통이다 7사(20.0%) 기타 업종의 경우는 아주 필요하다 25사(54.3%)로 나타났다.

7) 환경비용의 측정 이유

환경비용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7)과 같다.

<표3-3-7> 환경비용 측정 이유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내부관리 목적상 필요해서	13 (34.2)	13 (43.3)	5 (14.3)	10 (21.7)	41 (27.5)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므로	9 (23.7)	9 (30.0)	8 (22.9)	11 (23.9)	37 (24.8)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3 (7.9)	3 (10.0)	2 (5.7)	6 (13.0)	14 (9.4)
정부기관 등에 자료 제출 위해	8 (21.1)	2 (6.7)	7 (20.0)	10 (21.7)	27 (18.1)
기타	1 (2.6)	2 (6.7)	3 (8.6)	2 (4.3)	8 (5.4)
무응답	4 (10.5)	1 (3.3)	10 (28.6)	7 (15.2)	22 (14.8)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내부관리 목적상 필요하다 41사(27.5%),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으로 측정한다가 37사(24.8%), 정부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측정한다가 27사(18.1%),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4사(9.4%)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내부관리 목적상 필요해서 13사(34.2%),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므로 9사(23.7%), 정부기관 등에 자료 제출 위해 8사(21.1%)의 순서였다. 양돈업의 경우는 내부관리 목적상 필요해서 13사(43.3%),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므로 9사(30.0%)로 나타났고 양식업의 경우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므로 8사(22.9%), 정부기관 등에 자료 제출 위해 7사(20.0%) 기타 업종의 경우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므로 11사(23.9%), 내부관리 목적상 필요해서와 정부기관 등에 자료 제출 위해서가 각각 10사(21.8%)의 순서로 나타났다.

8) 환경비용의 부담방법

환경비용을 측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결과는 아래 <표3-3-8>과 같다.

<표3-3-8> 환경비용의 부담 방법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제품원가에 포함	8 (21.1)	9 (30.0)	4 (11.4)	11 (23.9)	32 (21.5)
원가절감을 통해	8 (21.1)	9 (30.0)	2 (5.7)	6 (13.0)	25 (16.8)
정부지원에 의존	1 (2.6)	1 (3.3)	13 (37.1)	5 (10.9)	20 (13.4)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도	13 (34.2)	9 (30.0)	10 (28.6)	11 (23.9)	43 (28.9)
기타	4 (10.5)	0 (0.0)	2 (5.7)	3 (6.5)	9 (6.0)
무응답	4 (10.5)	2 (6.7)	4 (11.4)	10 (21.7)	20 (13.4)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도에 따른다 43사(28.9%), 제품원가에 포함시킨다 32사(21.5%), 원가절감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가

25사(16.8%),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 20사(13.4%)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도에 따른다 13사(34.2%), 제품원가에 포함과 원가절감을 통해서가 각각 8사(2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양돈업의 경우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원가절감을 통해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보에 따른다가 각각 9사(30.0%)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양식업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에 의존한다가 13사(37.1%),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도에 따른다가 10사(28.6%)의 순서이고, 기타의 업종에서는 제품원가에 포함과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도에 각각 11사(23.9%)로 나타났다.

#### 9) 환경비용의 집계방법

환경비용을 집계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집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3-3-9>와 같이 나타났다.

<표3-3-9> 환경비용의 집계방법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요소별 집계	4 (10.5)	0 (0.0)	3 (8.6)	1 (2.2)	8 (5.4)
각 부문별 집계	2 (5.3)	4 (13.3)	0 (0.0)	7 (15.2)	13 (8.7)
총괄적으로 집계	8 (21.1)	14 (46.7)	6 (17.1)	9 (19.6)	37 (24.8)
다른비용과 혼합 집계	10 (26.3)	1 (3.3)	3 (8.6)	11 (23.9)	25 (16.8)
집계하고 있지 않음	12 (31.6)	10 (33.3)	21 (60.0)	11 (23.9)	54 (36.2)
무응답	2 (5.3)	1 (3.3)	2 (5.7)	7 (15.2)	12 (8.1)
계	38 (25.5)	30 (20.1)	35 (23.5)	46 (100.0)	149 (100.0)

우선 환경비용을 집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 54사(36.2%)와 무응답 12사(8.1%)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집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계를 하는 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37사(24.8%), 다른 비용과 혼합하여 집계한다가 25사(16.8%), 각 부문별로 집계하고 있다 13사(8.7%), 요소별로 집계한다 8사(5.4%)의 순서로가 응답을 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다른 비용과 혼합한다에, 양돈업과 양식업에서는 총괄적으로 집계한다는 응답의 수가 많이 나타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108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처리가 중요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를 내용별로 보면 회계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가 무려 45사(41.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상업무가 과중함으로가 28사(25.9%), 금액이 많지 않음이 27사(25.0%), 기타가 8사(7.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와 일상업무가 과중해서가 각각 9사(32.1%), 회계처리규정이 없어서가 8사(28.6%)로 나타났으며, 축산(양돈)업에서는 회계처리규정이 없어서가 10사(41.7%)로 가장 많고, 일상업무가 과중해서가 9사(37.5%)로 나타났으며, 회계처리규정이 없어서가 양식업에서 15사(60.0%), 기타 업종에서 12사(38.7%)로 나타났다.

#### 10) 환경비용의 회계처리방법

환경비용에 대해 집계를 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독립계정을 설정해서 하는지, 간접비용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79사가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3-3-10>과 같다.

조사기업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집계한 후 이를 간접비용에 포함시킨다가 전 유효표본기업의 75.9%(60사)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환경비용에 대해 독립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회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환경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3-3-10> 환경비용의 회계처리방법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독립계정 설정	0 (0.0)	4 (23.5)	2 (16.7)	6 (23.1)	12 (15.2)
간접비용에 포함	22 (91.7)	10 (58.8)	8 (66.7)	20 (76.9)	60 (75.9)
기타	2 (8.3)	3 (17.6)	2 (16.7)	0 (0.0)	7 (8.9)
계	24 (30.4)	17 (21.5)	12 (15.2)	26 (32.9)	79 (100.0)

11) 환경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

환경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3-11>과 같다.

<표3-3-11> 환경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항목인식 곤란	5 (13.2)	4 (13.3)	10 (28.6)	5 (10.9)	24 (16.1)
귀속기간 결정 곤란	7 (18.4)	4 (13.3)	6 (17.1)	3 (6.5)	20 (13.4)
발생의 희소성	6 (15.8)	1 (3.3)	3 (8.6)	7 (15.2)	17 (11.4)
비화폐·비정량 성격	10 (26.3)	8 (26.7)	4 (11.4)	13 (28.3)	35 (23.5)
기타	0 (0.0)	1 (3.3)	0 (0.0)	0 (0.0)	1 (0.7)
무응답	10 (26.3)	12 (40.0)	12 (34.3)	18 (39.1)	52 (34.9)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전체적으로는 무응답이 52사(34.9%)로 가장 많고 비화폐·비정량적 성격 때문이다가 35사(23.5%), 항목인식 곤란 24사(16.1%), 귀속기간 결정 곤란이 20사(13.4%), 발생의 희소성이 17사(11.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비화폐·비정량 성격때문이다가 제조업의 경우 10사(26.3%),양돈업이 8사(26.7%), 기타 업종에서는 13사(28.3%)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양식업에서는 항목인식 곤란이 10사(28.6%)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 제4절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한 설문은 1)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여부 2)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의향 3)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이유 4)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형태 5) 환경회계정보의 바람직한 공시방법의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 1)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여부

우선 환경회계정보를 외부에 공시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여부는 <표 3-4-1>과 같다.



<표3-4-1> 환경회계정보의 외부 공시 여부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공시되지 않는다	22 (57.9)	19 (63.3)	18 (51.4)	27 (58.7)	86 (57.7)
공시되고 있다	6 (15.8)	2 (6.7)	0 (0.0)	10 (21.7)	18 (12.1)
장차 공시할 예정	5 (13.2)	5 (16.7)	9 (25.7)	2 (4.3)	21 (14.1)
무응답	5 (13.2)	4 (13.3)	8 (22.9)	7 (15.2)	24 (16.1)
계	38 (23.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현재 공시되지 않는다는 기업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86사(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되고 있다가 18사(12.1%)이며 장차 공시할 예정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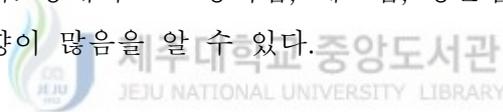
21사(14.1%), 무응답이 24사(16.1%)가 차지하고 있다.

2)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의향

현재 공시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하여 기업이 환경자료를 공시할 의향이 앞으로 없는가를 5점 척도에 의해 재차 설문한 결과는 <표3-4-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다 48사(37.8%), 보통이다 46사(36.2%), 아주 많다 15사(11.8%)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가 각각 9사(7.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환경과 환경비용 측정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조금 있다 16사(48.5%), 보통이다 10사(30.3%)로 나타났다. 양돈업의 경우 보통이다 14사(53.8%), 조금 있다 6사(23.1%)로 나타났고 양식업의 경우는 조금 있다 15사(55.6%), 보통이다 6사(22.2%)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의 경우는 보통이다 16사(39.0%), 조금 있다 11사(26.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양식업, 제조업, 양돈업의 순서로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할 의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3-4-2>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의향(공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전혀 없다	1 (3.0)	1 (3.8)	0 (0.0)	7 (17.1)	9 (7.1)
거의 없다	2 (6.1)	1 (3.8)	4 (14.8)	2 (4.9)	9 (7.1)
보통이다	10 (30.3)	14 (53.8)	6 (22.2)	16 (39.0)	46 (36.2)
조금 있다	16 (48.5)	6 (23.1)	15 (55.6)	11 (26.8)	48 (37.8)
아주 많다	4 (12.1)	4 (15.4)	2 (7.4)	5 (12.2)	15 (11.8)
계	33 (26.0)	26 (20.5)	27 (21.3)	41 (32.3)	127 (100.0)

3)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이유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표3-4-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법률적인 규제 때문에 54사(31.4%), 사회적 책임 29사(16.9%), 기업의 이미지 제고 24사(1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법률적인 규제 11사(25.0%), 사회적 책임 10사(22.7%) 양돈업의 경우 법률적인 규제 10사(27.0%), 기업의 이미지 제고 8사(21.6%), 양식업의 경우 법률적인 규제 16사(43.2%) 기타 업종의 경우는 법률적인 규제 17사(31.5%)로 가장 많았다.

<표3-4-3>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이유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환경활동결과에 자신	4 (9.1)	0 (0.0)	0 (0.0)	3 (5.6)	7 (4.1)
법률적인 규제	11 (25.0)	10 (27.0)	16 (43.2)	17 (31.5)	54 (31.4)
사회적 책임	10 (22.7)	6 (16.2)	3 (8.1)	10 (18.5)	29 (16.9)
기업의 이미지 제고	6 (13.6)	8 (21.6)	2 (5.4)	8 (14.8)	24 (14.0)
무응답	13 (29.5)	13 (35.1)	16 (43.2)	16 (29.6)	58 (33.7)
계	44 (25.6)	37 (21.5)	37 (21.5)	54 (31.4)	172 (100.0)

4) 환경회계정보의 공시형태

환경과 관련된 회계자료를 외부에 공시 혹은 보고되고 있다면 어떤 서류에 해당되어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4-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총 응답 기업 75사에서 유관기관 제출서류가 40사

(53.3%), 영업보고서 20사(26.7%), 회계보고서 10사(13.3%), 기타 5사(6.7%) 순이다.

업종별로는 유관기관 제출서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영업보고서가 5사(27.8%), 양돈업의 경우 회계보고서 3사(37.5%)로 나타났다. 기타 업종에서는 유관기관 제출서류와 영업보고서가 각각 13사(41.9%)로 높게 나타났다.

<표3-4-4> 환경회계정보의 공시형태

(단위 : 사(%))

조사항목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영업보고서	5 (27.8)	1 (12.5)	1 (5.6)	13 (41.9)	20 (26.7)
회계보고서	4 (22.2)	3 (37.5)	0 (0.0)	3 (9.7)	10 (13.3)
유관기관 제출서류	8 (44.4)	4 (50.0)	15 (83.3)	13 (41.9)	40 (53.3)
기타	1 (5.6)	0 (0.0)	2 (11.1)	2 (6.5)	5 (6.7)
계	18 (24.0)	8 (10.7)	18 (24.0)	31 (41.3)	75 (100.0)

기업이 환경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추후 공시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진행절차 요령 등을 몰라서가 52사(37.7%), ② 법률적인 요구의 부족이 23사(16.7%), ③ 환경정보 공시를 위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는 23사(16.7%), ④ 환경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21사(15.2%), ⑤ 환경정보공시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가 16사(11.6%), ⑥ 기타가 3사(2.2%)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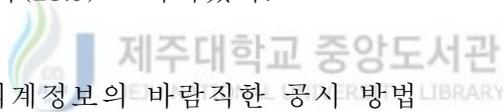
#### 5) 환경회계정보의 바람직한 공시방법

마지막으로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3-4-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현 회계보고서와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서

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가 46사(33.3%), 현행 회계보고서에 환경 정보를 추가시키는 방법이 32사(23.2%), 현 재무제표에 환경정보에 관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은 22사(15.9%), 새로운 보고서 양식으로 하되 주석 또는 보충설명서를 설명하는 방법 20사(14.5%), 나머지는 기타 또는 무응답에 표시를 해주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현행 회계보고서에 환경정보를 추가시키는 방법과 현 회계보고서와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가 각각 12사(31.6%)로 나타났고 양돈업의 경우는 현 회계보고서와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신설하는 방법이 15사(50.0%)로 나타났다. 양식업의 경우는 현행 회계보고서에 환경정보를 추가시키는 방법 11사(31.4%), 현 회계보고서와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신설하는 방법 7사(20.1%)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의 업종에서는 현 회계보고서와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신설하는 방법 12사(26.1%), 현 재무제표에 환경정보에 관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 11사(23.9%)로 나타났다.



<표3-4-5> 환경회계정보의 바람직한 공시 방법 (단위 : 사(%))

조사결과 \ 업종	제조업	양돈업	양식업	기타	전체
현행 회계보고서에 환경정보추가	12 (31.6)	3 (10.0)	11 (31.4)	6 (13.0)	32 (23.2)
새로운 보고서양식으로 하되 주석/ 보충설명서로 설명	4 (10.5)	5 (16.7)	4 (11.4)	7 (15.2)	20 (14.5)
현 재무제표에 환경정보에 관한 계정 추가	5 (13.2)	3 (10.0)	3 (8.6)	11 (23.9)	22 (15.9)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 보고서 신설	12 (31.6)	15 (50.0)	7 (20.0)	12 (26.1)	46 (33.3)
기타	1 (2.6)	0 (0.0)	0 (0.0)	2 (4.3)	3 (2.2)
무응답	4 (10.5)	4 (13.3)	10 (28.6)	8 (17.4)	26 (18.8)
계	38 (25.5)	30 (20.1)	35 (23.5)	46 (30.9)	149 (100.0)

## 제4장 결 론

기업의 환경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 기업의 사회보고 의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기업에서도 환경비용에 대한 인지도와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환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높은 인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회계는 증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즉, 환경회계는 기업의 환경비용을 규명하고 측정하여 적절히 배분하며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주변의 환경파괴현장은 손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계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를 과감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제주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회계정보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회계역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인식 및 환경개선에 대한 조사기업의 응답을 살펴보면 환경 문제와 기업의 직접적인 관계여부에 대해서는 149사중 100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응답기업과 관련 있는 환경문제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자도 기업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복구

의 책임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환경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오염이나 공해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회계정보의 측정에서는 환경비용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와 환경비용의 지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제주지역의 특성상 환경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비용 측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환경비용을 측정하거나 집계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측정한다고 해도 별도로 관리하기 보다는 간접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회계정보로서의 별 이용가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서는 아직까지 제주지역 기업에서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자발적인 공시라기 보다는 법률적인 규제에 의한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류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회계정보를 창출하는 진행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요구가 부족함으로, 환경정보 공시를 위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공시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환경회계정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제주지역 기업은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정제주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계점으로는 우선 이런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석사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질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고찰에서는 개념적 기초를 검토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회계정보의 측

정과 공시에 대한 실태조사내용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상장기업이 아닌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환경의 중요성에 따른 회계적 측면의 이론적·실무적 연구의 심층적 고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주지역의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는 비용측정과 회계정보의 공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종대, 최종서 공역, 환경회계의 현황과 과제(山上達人, 菊谷正人 공편저 1999, 선학사)
- 대한상공회의소, 환경회계의 국제동향과 국내도입방안, 1999, 대한상공회의소
- 장지인·정길채공역, 환경회계: 환경원가와 환경부채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편, 1999, 울곡출판사)
- 고선풍, 기업환경회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6.
- \_\_\_\_\_,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군산대학교 「산업개발 연구」, 제15집 1996.12.
- 고선풍·권영호, 기업의 환경활동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 제11집, 1992.12.
- 김경수, 환경회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95.
- 김남면, 환경문제와 환경정보의 공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1999.5.
- 김동극,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1999.
- 김상진,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김선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3.
- 김진성,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김희언, 환경회계정보처리와 공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1982.
- \_\_\_\_\_, 환경회계정보처리와 공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 김희조, “기업의 특질 및 산업분류에 따른 환경회계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

-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5호, 1992.12.
- 문승엽,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세계 각 국 및 한국의 환경회계공시실태 중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박연호, 환경회계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6.
- 서경하,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송혁준,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강호,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이만우, "녹색회계보고", 「회계」, 제29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993.
- 이상현,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회계정보의 공시현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이선범,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연구 : 환경원가의 인식 측정과 공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 이승화, 환경회계와 기업경쟁력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논문, 2000.
- 이윤규, 제조기업의 환경보전비용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업사회회계적 접근, 「경기교육논총」 제3호, 1993.
- 이재득,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춘재,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임정기, 환경회계정보의 공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임형성,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정혜영 · 주진규, “공해물질누출발견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 「경영학연구」, 31호, 1992. 5.
- 조기숙, 환경회계공시제도 국제적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조재순, 환경회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9.

한주환, 환경회계에 관한 연구 :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황신자, 환경회계정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 2. 국외문헌

### <일본문헌>

徳谷昌勇, 企業社會會計論, 東京 白桃書房, 1979.

ベルディーズ研究所, 「營業報告書にみる企業の環境情報の開示」, リサイクル文化社, 1992.

河野正男, 環境保全コストの把握及び公表に関するガイド, 「會計」, 第156卷 第1号, 1999.

宮崎修行, 統合的環境會計手法の探求, 「會計」, 第155卷 第6号, 1999.

八木裕之, 環境コスト概念の分析, 「會計」, 第156卷 第2号, 1999.

宮本はるみ, 環境會計の領域とその現状, 「商經論集」, 1997.

日經産業消費研究所, 「21世紀の環境經營」, 日本經濟新聞社, 1999.

菊谷正人, 環境破壊と會計・租稅, 「會計」, 第143卷 第5号, 1993.

山上達人・菊谷正人 編著, '環境會計の現況と課題', 同文館, 1995.

財團法人 地球人間環境フォーラム, 「環境にやさしい企業行動調査報告書」, 1994.

### <서양문헌>

AAA, Committee on Environmental Effects of Organization Behavior, "report of Committee on Environmental Effects of Organization Behavior", *The Accounting Review*, Vol. 52, 1977.

A.W.Corcoran & W.E.Leininger, "Financial Statement Who Needs Them?", *Financial Executive*, Aug., 1970.

CICA, Financial Reporting in CANADA 1993 Twentieth Edition-A

- Survey of Annual Reports of Canadian Public Companies for 1992, 1991, 1990 and 1989, CICA, 1993.
- Barnard C. I.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 1938.
- D. R. Beresford,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 Grows", *Management Accounting*, May 1977.
- EITF, *Capitalization of Costs to Treat Environment Contamination*, FASB Issue 90-8, 1991.
- EITF, *Accounting for Environmental Liabilities*, FASB Issue 93-5 1993.
- EPA,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Accounting as a Business Management Tool : Key Concepts and Terms*, June, 1995.
- FASB,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AA, 1966.
- FASB,, SFAS, No.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1975.
- FASB, FASB Interpretation No.14 *Reasonable of Estimation of the Amount of a Loss*, 1976.
- George, O. Gamble, athy Hsu, Devaun Kite & Robin R. Radtke, Environmental Disclosure in Annual Reports and 10 ks : A Examination, *Accounting Horizons*, Vol.9, No.3, 1995.9.
- Ivy, Penman James R. Stock, *Environmental Issues in Logistics, Logistics Handbook*, Chapter 40.
- J. T. Marlin, Accounting for Pollution, *The Journal of Accountancy*, Feb., 1973.
- KPMG, *UK Survey f Environmental Reporting*, KPMG, 1994.
-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Environmental Policy in Netherlands*, NFIA, Sep., 1991.
- New York Times, June, 24, 1990.
- Rob Gray, Bebbington, "Accounting for the environment", *Green Accounting*, Wiener Markus Pub, Inc, 1993.
-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Environmental Reporting in Canada : A survey of 1993 reports*, Nov., 1994.

# ABSTRACT

## A Study on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accounting and public announcement

Sang-Hoon Baek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ung-Hyo Ko*



There is a growing concern on what influence companies have on the environment as consumer and other civic groups lead environmental protection drives over the global environment deteriorating faster than ever before.

On the part of companies, the ability of managing their businesses, adjusting to the environment that changes at a rapid pace, is critical to the survival of their companies.

Along with the new trend in the corporate world, the role of accounting calls for a change. Corporate accounting that records and publicly announces business activities cannot be ignorant of environmental issues. What calls for change in the role of corporate accounting is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tructure firm and practical enough to provide solid foundations for a company to grow and sustain

its growth. For this to happen, more efforts to keep track of environmental activities of the company and announce them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ow data of environmental accounting is measured and announced, by surveying and analyzing levels of awareness of environmental accounting, based on the theoretical studies in the field conducted by advanced countries and business activities of companies in Cheju Province; and on the necess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 and the new direction of the role environmental accounting should take. Documented data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chieve the goal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urveying companies in Cheju Province – categorized by manufacturing, pork industry, aquafarming, and other businesses – are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rais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improve conditions, compan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issues, and systematical supervision, publicity methods devis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Cheju Province, and education are needed.

Secondly, when it comes to measuring the data of environmental accounting, more effectiv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cost is called for because most of the companies surveyed have very low levels of awareness of the issue and are not aware of environmental cost.

Thirdly, in terms of announcing information of environmental accounting, most companies surveyed, even though not now done, showed willingness to announce their business-related environmental activities in the future if it is promised that standards of measuring information of environmental accounting are effective and fair.

For follow-up studies, deeper insight into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from the accounting perspective is needed, as well as further studies on measuring environmental cost that fit the sca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es and companies in Cheju Province, and accounting data of environmental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백상훈입니다. 저는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환경회계정보의 측정과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진 각 국의 실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제주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회계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회계역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문에 대한 귀하(사)의 의견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순수한 연구목적이외 다른 목적에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사)의 의견을 피력해 주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9월 일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지도교수 : 고 성 호

대학원생 : 백 상 훈

연락처 (우) 690-811 제주시 삼도1동 532-8 동원빌딩 4층

전 화 : 726-2133(사) Fax : 726-2570 핸드폰 : 016-690-6074

e-mail : pluslive@unitel.co.kr



II. 제주지역 기업의 환경에 대한 귀사(귀하)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 환경문제는 귀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8. 귀사가 환경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폐기물오염  
⑤ 굉음·진동·악취 ⑥ 해양오염
9.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10.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11. 환경오염이나 공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12.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거의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13. 귀사에서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14. 위의 13번에서 없다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새로운 시설 투자가 필요함으로 ② 비용이 과다  
③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④ 기타 ( )
15. 환경에 대한 귀사의 노력·태도에 대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주민과의 관계 ② 기업가의 책임과 양심  
③ 법적 제약과 유관기관 통제 ④ 기 타 ( )



24. 환경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하고 있습니까?  
 ① 제품원가에 포함 ② 원가절감을 통해 ③ 정부지원에 의존  
 ④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정도 ⑤ 기타 ( )
25. 환경보전(공해방지)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① 요소별 집계 ② 각 부문별 집계 ③ 총괄적으로 집계  
 ④ 다른 비용과 혼합 집계 ⑤ 집계하고 있지 않음
26. 환경비용을 집계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독립계정 설정 ② 간접비용에 포함  
 ③ 기타 ( )
27. 환경비용의 측정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큰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 )  
 ① 환경비용의 항목인식 구분 곤란 ② 환경비용의 귀속기간 결정 곤란  
 ③ 환경비용의 발생의 회소성 ④ 환경비용의 비화폐·비정량 성격  
 ⑤ 기타( )
28. 환경비용이 회계처리상 중요시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회계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 ② 금액이 많지 않음  
 ③ 일상업무가 과중하므로 ④ 기타( )
29. 환경과 관련된 회계 자료는 외부에 공시되고 있습니까?  
 ① 공시되지 않는다 ② 공시되고 있다 ③ 장차 공시할 예정이다
30. 외부에 공시(혹은 보고)되고 있다면 어떤 서류에 해당합니까?  
 ① 영업보고서 ② 회계보고서 ③ 유관기관 제출서류 ④ 기타 ( )
31. 기업이 환경자료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환경관련 활동결과에 자신이 있다. ② 법률적인 규제 때문이다.  
 ③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④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⑤ 기타 ( )
32. 기업이 환경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진행절차 요령 등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다.  
 ② 법률적인 요구의 부족 ③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가 없다  
 ④ 환경정보 공시를 위한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⑤ 환경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⑥ 기타 ( )

33. 기업이 환경자료를 공시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공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34. 환경정보의 공시방법 중 바람직한 공시방법은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회계보고서에 환경정보를 추가시키는 방법  
② 새로운 보고서 양식으로 하되 주식 또는 보충설명서로 설명하는 방법  
③ 현 재무제표에 환경정보에 관한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  
④ 현 회계보고서와 별도의 새로운 환경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신설하는 방법  
⑤ 기타( )

